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대한 「소관부처 의견」 검토

N a t i o n a l A s s e m b l y B u d g e t O f f i c e

2009. 9. 23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대한
「소관부처 의견」 검토**

2009. 9. 23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귀하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심재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요구한 조사분석(2009. 9. 17. 접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본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2009. 7)에서 지적한 정부 결산 상의 문제점 및 시정·제도개선 제안사항에 대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소관부처에 의견을 제출토록 요구한데 따른 결과를 검토하여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23일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

목 차

I. 총 관 / 1

II. 부처별 검토 / 15

1. 부처 공통사항	17
2. 법무부	20
3. 국무총리실	22
4. 공정거래위원회	23
5. 국민권익위원회	24
6. 기획재정부	25
7. 국세청	31
8. 관세청	33
9. 통계청	34
10. 외교통상부	35
11. 국방부	39
12. 방위사업청	44
13. 병무청	46
14. 행정안전부	47
15. 경찰청	51
16. 교육과학기술부	53
17. 문화체육관광부	64
18. 문화재청	88
19. 방송통신위원회	89
20. 농림수산식품부	91

21. 지식경제부	102
22. 중소기업청	107
23. 특허청	114
24. 보건복지가족부	115
25. 식품의약품안전청	124
26. 환경부	126
27. 노동부	132
28. 국토해양부	139
29. 해양경찰청	153

I. 총괄

I. 총괄

1. 분석 개요

- 동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이하 ‘국회예산처’)가 2009년 7월 발간한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정부 결산의 문제점 및 시정·제도개선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28개 부처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처 분석결과에 대한 소관부처의 의견을 “조치완료, 동의, 일부동의, 수용불가, 답변회피·누락”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함
 - 소관부처별로 사업명, 문제점 및 시정의견은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국회의 2008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는 사항 위주로 작성함
 - 부처 의견에 대해서는 부처의 제출한 취지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요약·작성하고, 이를 5대 유형별로 분류·검토함

유형	내용
① 조치완료	국회예산처 지적대로 2008 결산에서는 문제가 있었지만, 2009년 9월 현재 조치가 완료된 경우
② 동의	국회예산처의 문제 지적에 동의하며, 현재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
③ 일부동의	국회예산처의 문제 지적 중 일부에 대해서만 동의하며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
④ 수용불가	국회예산처의 문제 지적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⑤ 답변회피·누락	국회예산처가 지적한 문제의 본질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2. 분석 결과 요약

- 자료 제출 부처: 법무부 등 28개 부처
 자료 미제출 부처: 국가보훈처, 통일부, 소방방재청의 3개부처
-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사업 246건 중, 지적사항에 대한 부처의견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일부동의, 수용불가, 답변회피·누락의 3개 유형에 속한 사업이 48건으로 19.5%를 차지함
 - 조치완료 5개 부처 7건(2.8%), 동의 25개 부처 191건(77.6%), 일부동의 12개 부처 20건(8.1%) 수용불가 10개 부처 17건 (6.9%), 답변회피·누락 6개 부처 11건(4.5%)

유형	부처	건수 (비중)
① 조치완료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	7건 (2.8%)
② 동의	법무부 등 25개 부처	191건 (77.6%)
③ 일부동의	국무총리실 등 12개 부처	20건 (8.1%)
④ 수용불가	법무부 등 10개 부처	17건 (6.9%)
⑤ 답변회피·누락	국방부 등 6개 부처	11건 (4.5%)
합계	법무부 등 총 28개 부처	246건 (100.0%)

3. 지적사항에 대한 소관부처의 조치사항 유형별 분류

부처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유형별 분류					계
	조치완료	동의	일부동의	수용불가	답변회피·누락	
부처공통사항					5	5
법무부		1		1		2
국무총리실		1	1			2
공정거래위원회		1				1
국민권익위원회		3				3
기획재정부	2	10	1			13
국세청		4				4
관세청		1				1
통계청		1				1
외교통상부		4	2	2		8
국방부	1	5	2	1	1	10
방위사업청			1	1	1	3
병무청				1		1
행정안전부		1	2		1	4
경찰청		1	1			2
교육과학기술부		8	3	3	1	15
문화체육관광부		53		4		57
문화재청		2				2
방송통신위원회		4				4
농림수산식품부	2	27				29
지식경제부	1	4	1	2	1	9
중소기업청		8		1		9
특허청		2				2
보건복지가족부		14	3		1	18
식품의약품안전청		1				1
환경부		6				6
노동부		10	1			11
국토해양부	1	19	2			22
해양경찰청				1		1
합 계	7	191	20	17	11	246

4. 유형별 지적사항 목록

[조치완료] : 7건

부처명	사업명 및 지적사항
기획재정부	1.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 건설사업의 집행부진 2. 여수산단주민 이주대책사업의 집행부진
국방부	1. 총액계상 각군 의무장비사업의 총액계상 지정사유 소멸
농림수산식품부	1.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사업의 연령, 경력조건 하향조정 필요 2. 화훼 공판장 경매시설사업의 집행부진
지식경제부	1.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 운용 손실 발생
국토해양부	1. 전세임대경상보조사업의 계획대비 집행실적 저조

[동의] : 191건

부처명	사업명 및 지적사항
법무부	1. 서울동부지검, 창원지검 진주지청 청사신축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국무총리실	1.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추진 관련 예비비 과다배정 및 불용
공정거래위원회	1. 과징금 환급 및 감액규모의 현저한 증가 문제
국민권익위원회	1. 고충처리 관련 사업의 민원처리 부진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사업 관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부진 3.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관련 각 부처 콜센터 기능중복 문제
기획재정부	1. WCO분담금의 연례적 집행부진 2. 경제협력기구 활동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3. 수도권 내륙화물기지 건설 지원사업의 집행부진 4. 국가회계제도 운영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5. 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 및 제도개선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6. 예산낭비대응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7. 국가회계제도 정비사업의 사전계획 미비로 인한 집행부진 8. 대개도국 차관사업의 집행부진 9. 국공채인수사업의 집행부진 10. 호남권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의 집행부진
국세청	1. 부산지방국세청 신축 및 합숙소 확보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2. 공부징취비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부처명	사업명 및 지적사항
	3. 토지 및 주택조사 지원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4. 결산 대비 전용감 비율 과다
관세청	1.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사업의 이월액 과다
통계청	1. 인력실태조사의 이·전용 한계 위반
외교통상부	1.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의 상반기 집행 문제 2. 국제교류기금의 재외동포재단 지원 부적정 3. 재외공관행정지원인력운용 관련 일부 불필요한 증원·채용 4. 면허료 및 수수료의 초과수납액 과다
국방부	1. 육군장비 유지 출장여비의 연례적 부족 2. 전직지원사업 관련 국방취업지원센터의 접근성 부족 3. 장교인건비 관련 장교증원의 타당성 미흡 4. 국방분야의 인건비 비중 과다 5. 군수정보체계사업 후속 인력·업무 조정 부재
행정안전부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경찰청	1. 연도말 전용감액 과다
교육과학기술부	1. 생명공학육성 관련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 평가 미흡 2.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성과지원센터의 기능 특화 필요성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의 지역간 불균형 교부 4.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의 수요예측 미흡 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자금운용실적 악화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관련 유치원의 부담금 체납 과다 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재무건전성 강화 필요 8. 정부초청장학생 교류 지원사업의 집행부진
문화체육관광부	1. 여가문화 활성화사업의 사업내용과 무관한 예산집행 2.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건립의 연례적 이월 3. 콘텐츠해외진출지원센터사업의 전용을 통한 사업추진 및 사업기간의 회계연도 불일치 4. DC제작 활성화사업의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5. SW지재권 영구보존 환경구축사업의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6. 문화콘텐츠 산업기술 지원사업의 기술료 수납실적 저조 7.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개발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8. 관객지향형 공연예술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9. 지능형문화공간인프라 기술개발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부처명	사업명 및 지적사항
	10. 모태펀드 사업추진 관련 문화산업진흥기금 여유자금의 조속한 출자 필요
	11. 신문유통원 지원사업의 공배율 정체에 따른 사업효과 저조
	12. 신문유통원 지원사업의 직영센터 순손실 지속 발생
	13. 신문유통원 지원사업 관련 메이저 신문사 참여제고 필요
	14. 방송영상콘텐츠 국제공동 제작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15. 2010월드레저대회 경기장 조성사업의 연례적 실집행실적 부진
	16. 전국체전 시설 지원사업의 실집행실적 부진
	17. 국가주요시책홍보사업 관련 국회감액사업의 전용을 통한 증액
	18. 교육기자재 구입 및 관리사업의 이·전용 과다
	19. U-AT통섭사업의 향후 사업추진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집행
	20. 국립중앙박물관 운영사업의 연례적 전용 및 조정 감액
	21. 국립나주박물관 건립사업의 집행부진
	22. 부여박물관 복합 문화센터 건립사업의 집행부진
	23. 한글사랑 운동 전개사업의 전용 부적정 및 행사성 경비 과다
	24. 건국60주년 기념 국어사랑 큰잔치사업의 예비비 집행 부적정
	25. 국립현대미술관 건물대여료 과소수납
	26.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실집행실적 부진
	27. 노인건강 생활 체육시설 조성사업의 실집행실적 부진
	28. 문화역사마을 조성사업의 실집행실적 부진
	29. 폐광지역 문화 자연체험형 상품사업의 실집행실적 부진
	30. 가고싶은 섬사업의 실집행실적 부진
	31.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의 계획수립 미흡으로 인한 사업집행 부진
	32. 도시관광 활성화사업의 계획수립 미흡으로 인한 사업집행 부진
	33. 1.5차 산업 활성화 시범사업의 사업기간과 회계연도 불일치
	34. 구서울역사관광자원화 사업의 계획미비로 인한 예산집행 부진 및 사업지연
	35. 지역관광 혁신모델 구축사업의 사업계획 미비에 따른 미집행
	36. 한국관광공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 미흡
	37.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사업의 연례적 계획 변경
	38. 체육기금의 여유자금 과다 운용
	39.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경정 특별적립금의 사업 부적정

부처명	사업명 및 지적사항
	40. 경정훈련원 건립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41.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사업의 집행부진 42.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의 실집행실적 부진 43.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실집행실적 부진 44. 운동장생활체육시설사업의 실집행실적 부진 45. 남북체육교류사업의 국고교부 실적 연례적 부진 46. 육상진흥센터 지원사업의 국고교부 실적 부진 47.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확보대책 마련 필요 48. 지역문화 예술 지원사업의 지원금 수도권 편중 49. 지역신문발전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사업의 여유자금 과다보유 50. 신문발전기금의 여유자금 과다보유 51. 유통지원 사업의 사전계획 수립 미비로 인한 집행부진 52. 투자자본 안정화사업과 문화산업기금 모태펀드 출자의 중복지원 53. 유통구조 선진화사업 관련 통합전산망 가입극장과 미가입극장 간 형평성 문제
문화재청	1.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연례적인 이월 및 실집행부진 2. 고건축물보수정비사업의 예산목적과 배치되는 집행
방송통신위원회	1. 한국교육방송공사 출자사업의 집행부진 2. 기업정보보호대응능력강화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부적정 3. 장애인방송제작 지원사업 관련 지상파방송사업자 외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미흡 4. 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농림수산식품부	1.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사업의 농업 외 직업 종사자 지원 문제 2.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사업 관련 인턴대상자를 창업농으로 성장시키는 사후관리 미흡 3.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4.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5. 농촌활력증진사업 관련 일부 지자체의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6. 농촌활력증진사업의 부처간 분리 추진 7.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8.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의 체험마을 당 평균방문객수와 관광매출액 정체 9.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10.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11. 원에브랜드 육성사업의 연례적 실집행실적 부진

부처명	사업명 및 지적사항
	12. 축산발전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과다 13. 마필육성사업의 용자 실적 부진 14.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의 용자 실적 부진 15. 노량진 수산시장 건립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16. 어촌어항 관광조성 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17.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 어촌관광개발사업의 실질적 통합 미흡 18. 수산물 생산이력제 도입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19. 생분해성 어구시범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20.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21. 바다목장 조성사업의 국회삭감예산 증액 22.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감척계획 과다 23.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의 연례적 실집행실적 부진 24.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관련 어업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미흡 25.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26.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의 배합사료 공급비율 저조 27. 노후원양어선 대체지원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지식경제부	1.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2.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3.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의 에너지원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부적절 4.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중 건물효율등급인정 건물에 대한 지원 미흡
중소기업청	1. 신용보증기관 출연사업의 예산절감 추진 부적절 2.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의 성과관리 미흡 3. 기술혁신선도기업육성사업 중 '이노비즈 기업 인증제도'의 예산액 초과집행 4. 신기술사업화평가사업의 기술성·사업성 평가 별도 수행에 따른 효율성 저하 5.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6.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7.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8.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중 중소기업정책정보시스템 브랜드의 임의 변경
특허청	1. 예산절감실적의 과장 2. 'e-연구노트 개발 및 보급사업'등 이·전용을 통한 신규사업의 추진
보건복지가족부	1. 생계급여사업의 예산추계 부적절 2. 장애수당 지급예산의 연례적 과다편성

부처명	사업명 및 지적사항
	3. 사회복지요원 직무교육인력 과다 추정 4. 보건복지시설기능 보강사업 집행실적 저조 5.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수도권 집중지원문제 6.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7.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의 산재보험료 지역별 격차 8. 청소년육성기금사업의 일반회계 사업과 차별화 미흡 9. 청소년공방 운영사업과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유사 10.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지방비 부담 과중 11.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사업의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12. 우수한약 육성사업의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13.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립사업의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14. 국민연금기금 운영사업의 운용실적 저조 및 기금운용의 전문성 미흡
식품의약품안전청	1.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미흡
환경부	1. 환경부 재정운용의 구조적 문제 2. 지방상수도사업 운영체계의 비효율성 3. 하수도사업의 비효율적 운영 4. 비점오염원 관리사업의 관리 부실 5. 폐기물 관리사업 추진기반 정비 부실 6. 보호구역 관리사업의 비체계적 추진
노동부	1. 일자리사업의 부처간 사업조정 및 성과평가체계 구축 미흡 2.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여건 미흡 3.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의 경기침체시 사업효과 반감 문제 4.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수행체계 정비 미흡 5. 고용보험기금사업 부정수급 문제 6. 산재보험 급여비 책임준비금 산정 부적정 7. 요양비 대부사업의 사전 수요예측 미흡 8. 산재예방사업의 산업재해 감소효과 미흡 9. 새터민, 영세자영업자, 자활대상자 직업훈련사업의 중도탈락률 과다 10. 직업방송 제작 및 송출사업의 성과 저조
국토해양부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연례적 실집행률 저조 2. 임대주택건설사업의 용자실적 부진 3. 공공분양주택공급 관련 사업의 용자실적 부진

부처명	사업명 및 지적사항
	4. 상수도 공급 관련 사업의 시설중복 및 과잉투자
	5.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지자체 실집행실적 저조
	6.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의 과도한 사업변경
	7.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지원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8.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연내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
	9. 부산신항 개발사업의 세부사업간 전용 및 조정 과다
	10. 광양항 3단계 건설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11. 평택·당진항 개발사업의 민자분담금 타사업 전용
	12. 목포신항 개발사업의 물동량감소로 인한 운영수입보장금 급증문제
	13.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의 전용액 과다
	14.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15. 혁신도시 건설지원 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16.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17.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18. 대전지하철건설국고보조사업 관련 대전광역시의 보조금 정산절차 미이행
	19.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일부동의] : 20건

부처명	사업명 및 지적사항
국무총리실	1. 공공부문 기강확립 관련 근시안적 조직 폐지·신설
기획재정부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사업의 예비비 사용 부적절
외교통상부	1. 국제교류재단이관사업의 이관사업 선정 부적절 2. 외교활동비 비공개에 법적 근거 미흡
국방부	1. 육·해·공군 사관학교 예산관리체계 부실 2. 국방비 관련 국방중기계획의 연례적 과다 편성
방위사업청	1. 국방연구개발비의 축소와 정책후퇴
경찰청	1. 이·전용을 통한 신규사업의 추진
행정안전부	1. 기록물 효율적 관리사업의 예비비 배정 후 전용 및 불용 2.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의 예비비 배정 부적절
교육과학기술부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계잉여금 정산분(보통교부금분)으로 국정과제 추진 2.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실집행률 부진 및 간접비 과다 지원

부처명	사업명 및 지적사항
	3.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일회성 지출경비 과다
지식경제부	1. 수출보험기금 환변동보험의 손실
보건복지가족부	1. 기초노령연금 부부공동수급비율 추정 부적정 2.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의 예산 과소편성 3. 영아기본보조금 지원 확대에 서비스질이 검토되지 않은 소규모 가정보육시설의 공급 증가
노동부	1. 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의 위탁 비중 과다
국토해양부	1. 국가하천정비사업의 사전사업계획 미비 및 포괄적 예산편성 문제 2. 인천국제공항철도 운영지원사업 관련 수요예측 부실

[수용불가] : 17건

부처명	사업명 및 지적사항
법무부	1.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외교통상부	1. 재외국민영사서비스지원사업의 수입대체경비 목적 외 사용 2. 여권발급 사업비의 절감대상사업 선정 부적정
국방부	1. 군수정보체계사업의 200억원 예산낭비
방위사업청	1. 시뮬레이터사업의 중소 방산업체 차별
병무청	1. 병무행정정보화사업의 이·전용 한계 위반
교육과학기술부	1.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의 지방비 부담률 과다 2. 이공계 인력관리 특별지원사업의 재원조성 및 운용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 필요 3. 국립대학 공간재산제사업의 실행행률 부진
문화체육관광부	1. 국립중앙도서관 건물대여료 과소수납 2. 문화중심도시 조성 기반사업의 부적정한 이월 3. 문화콘텐츠 기술연구 기반조성 연구사업의 부적정한 이월 4. 템플스테이 운영 및 국제선센터 건립사업의 경상경비 지원관련 문제
지식경제부	1. 수출보험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미제출 2. 부하관리사업의 한국전력공사 자체추진 필요
중소기업청	1.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사업의 전용절차 위반
해양경찰청	1. 전용을 통한 ‘여수방재 비축기지 신축’사업 신규 추진

[답변회피·누락] : 11건

부처명	사업명 및 지적사항
부처 공통사항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재원의 일반회계 의존성 심화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일부 사업의 자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 과다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시도별 자원배분 비공개 문제 4.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국고보조사업 과다 5. 항공마일리지 활용실적 미흡
국방부	1. 연도말 전용감액 규모 및 비율 과다
방위사업청	1. 연도말 전용감액 규모 및 비율 과다
행정안전부	1. 특별교부세의 목적 외 사용
교육과학기술부	1.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예산과목 임의 변경(보조금→출연금)
지식경제부	1. 전략기술개발사업의 기술료 집행 부적정
보건복지가족부	1.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운용 책임성 취약

II. 부처별 검토

1. 부처 공통사항

연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	국가균형 발전특별 회계 세입 (8,235,687 백 만 원 , 예산현액)	문제점	- 균특회계 재원의 일반회계 의존성 심화,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이 전체 균특세입의 59.6%를 차지, 주세와 부담금은 균특회계의 안정적 세입재원이 될 수 없음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의견 회신이 없었음	【답변회피·누락】
	시정의견	-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2010년부터 개편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재원조달 마련의 대책을 강구할 것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필요(부대의견)			
2	국가균형 발전특별 회계 세출 (8,235,687 백 만 원 , 예산현액)	문제점	- 2008년 균특회계 일부 사업에 대해서 재원없는 세출예산의 이월이 다수 있었던 바, 이는 균특회계 세출예산 이월의 사유 중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음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의견 회신이 없었음	【답변회피·누락】
	시정의견	- 수납실적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재원없는 이월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음(주의)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3	국가균형 발전특별 회계 세출 (8,235,687 백 만 원 , 예산현액)	문제점	- 균특회계 시도별 자원배분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 국회의 예산안심의를 받지 못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의견 회신이 없었음	【답변회피·누락】
시정의견	- 균특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의 지자체별 배분내역을 국회 소관상임위에 보고할 필요(제도개선)				
4	자치단체 보조 (일반회계, 특별회계) (21,147,670 백만원)	문제점	-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나타난 국고보조금의 대상 사업 수(90개)보다 실제 국고보조 사업의 수(정부추산 200여개, 행안부, 「지자체 예산개요」상에는 1,060개)가 훨씬 더 많아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의 예·결산 심의과정에 각각 문제를 발생시킴 - 국회의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 시 지방비부담률과 부담능력에 대한 고려가 사실상 불가능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의견 회신이 없었음	【답변회피·누락】
시정의견	- 「보조금법시행령」에 기준보조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국고보조사업의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과 국고보조사업의 단위수 자체를 줄일 수 방안 검토 필요(제도개선)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5	항공 마일리지 활용실적 미흡 (비예산주제)	문 제 점	-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사용실적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회 전체 적립인원(92명)의 21,7%(20명)만이 마일리지 활용을 위한 최소적립마일리지를 충족 - 마일리지를 활용한 좌석승급 대상자는 국장급 이상이어서 활용이 제한적 - 향후 국장급 이상의 좌석승급 등을 통해 항공 마일리지를 적극 활용할것임 	<p>【답변회피·누락】 , 【동의: 진실화해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부처에서 의견을 미제출 - 의견을 제출한 진실화해 위원회는 항공마일리지 활용의 한계가 인정되며 향후 계획이 적절
시정의견	- 항공마일리지의 적극적 활용 필요				

2. 법무부

연 번	사업명 (일반회계) (2008예산액)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	예산의 목적외 사용	<p>문 제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청 시설운영 사업과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 운영사업'등으로부터 3억 8,900만원을 전용하여 매점매석 행위 단속경비로 사용하였으며, 영상녹화 등 과학수사 사업과 형집행 사업으로부터 2억 7,900만원을 전용하여 범죄수입환수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음. - 전용된 사업들 간 유사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전용의 한계를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청 시설 운영사업 등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게 된 사유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절감지침에 의하여 이미 절감되어 불용하기로 한 예산을 동지침에서 활용가능하도록 지정한 국정과제인 매점매석행위 등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사업, 범죄수익환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각 전용한 것임 	<p>【수용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시설운영사업과 매점매석행위단속 등은 사업간 유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전용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임 - 다만, 예산의 신속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절감 및 활용지침에 의하여 전용을 할수 있으나 이또한 국가재정법 제46조의 전용범위내에서 집행되어야 함
		<p>시정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전용의 한계범위를 준수 하도록 할 것 		

연 번	사업명 (일반회계)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2	<p>집행실적 연례적 부진</p> <p>서울동부 지검(5,000 백만원)</p> <p>창원지검 진주지청 (500백만원)</p>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의 서울동부지검, 창원지검 진주지청 청사신축 사업 연례적인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동부지검의 경우 문정지구로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위 문정지구 사업진행이 일부 과다 토지보상을 노린 악성 민원인들의 소송과 직접토지매입방식에서 도시개발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사정으로 순연되는 바람에 부지매입이 지연되어 사업진행이 원활 할때까지 사업추진 유보, 2010 예산안 편성에 제외 하였음 -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혁신도시로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혁신도시위원회에서 혁신도시를 제한함에 따라 진주시로부터 적당한 부지를 재차 여러곳을 추천 받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부지선정이 지연되었는데, '08년 12월 말경 법원과 협의한 결과 구도립직업전문학교를 이전부지로 선정하여 '09년 10월경 매입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p>【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년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서울동부지검의 경우 사업추진유보를 통해 조치가 완료되었으나, 연례적 집행부진 해소를 위한 예산상 조치계획이 없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음.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 필요 		

3. 국무총리실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	공공부문 기강확립 (일반회계) (474백만원)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부조리 점검활동 관리 소홀 - 근시안적인 정책변경에 의한 경비 추가지출 - 연례적인 인원 증원·조직신설에 대한 예비비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신설 과정에서 업무 정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공무원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활동이 다소 미흡하였음 -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조사심의관실'을 폐지하였다가, 공직기강 확립 필요성이 커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다시 신설한 점은 성급했던 측면 인정 - 조직신설 및 관련인원 구성 과정에서 예비비사용이 불가피하였음 	【일부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활동이 취약했던 점과 조직개편 시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 - 향후 근시안적인 조직폐지와 신설을 지양하고, 예비비사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부조리 점검업무 소홀, 근시안적 조직 폐지·신설로 인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 주의 촉구 - 연례적 예비비 사용을 줄이고 본예산에 편성할 것 		
2	건국60주년 기념사업 추진 (일반회계) (3,797 백만원, 예비비)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비 과다배정 및 과다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국 60주년사업은 2008년 2월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예비비사용 불가피 - 조직신설 및 사업 초기단계 준비과정이 늦어져 예비비 중 일부를 불용 - 향후 적절한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하겠음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비사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 설명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비를 배정 받은 후 절감 또는 불용할 것이 아니라, 당초에 예비비를 신청할 때 소요를 정확히 반영하여 최소화 할 것 		

4. 공정거래위원회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	과징금 (일반회계) (136,063 백만원)	<p>문 제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과징금 환급 및 감액 규모는 총 1,305억 1,100만원으로서 2006년 723억 1,600만원에 비하여 현저하게 증가 - 피심인의 환급가산금 채권에 비하여 국가의 채권인 체납가산금 채권만을 지나치게 우대하고 있음 <p>시정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산정 및 부과기준에 대한 객관성 제고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 - 체납·환급가산금 비율을 대통령령에 직접 정하도록 하는 등 수범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각각의 가산금 비율을 정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정성을 높이고 환급 규모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방안을 추진 -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과징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징금 산정내역을 피심인에게 사전 송부하도록 절차규칙 개정('09.3) - 과징금 산정에 있어 관련매출액에 관한 연구용역 시행중 -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위하여 2009년 행정소송예산을 438백만원(전년대비 38.2% 인상) 증액하여 편성 - 공정위는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며, 차기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시 반영하여 시행 - 체납가산금은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이고, 환급가산금은 시행령개정사항으로서 개정작업이 진행중 	<p>【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의견을 수용하여 향후 과징금 환급 및 감액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시정의견을 수용하여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임

5. 국민권익위원회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	고층처리 관련 사업 (일반회계) (7,721 백만원)	문 제 점	- 예산증가에도 불구하고 미완료건이 증가하는 등 민원처리 부진	- 2009년 1월부터 사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적과 같이 불수용건 위주의 사후관리에서 미완료 수용건 관리 강화를 추진 중 - 미완료 시정권고 건 등의 진행추이 파악을 위해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 계획(2009 하반기)	【동의】 - 미완료 수용건 관리 강화로 방향 전환
	시정의견	- 불수용 중심의 사후관리에서, 미완료 수용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실질적 민원 해소 필요			
2	시민고층 처리위원 회 활성화 (일반회계) (96백만원)	문 제 점	- 시민고층처리위원회의 설치 부진	- 시민고층처리위원회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것이지만 확실적인 설치규정으로 인하여 설치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설치규정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음	【동의】 - 시민고층처리위원회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법률개 정을 추진 중에 있음
	시정의견	- 시민고층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3	정부민원 안내콜센 터운영 (일반회계) (2,900 백만원)	문 제 점	-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들의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성 유발 우려	- 소규모 콜센터, 실적 저조 및 비효율적인 콜센터, 시스템 교체 또는 증설이 필요한 콜센터, 신규 콜센터 구축 계획 기관 등을 검토하여 통합을 추진할 계획	【동의】 - 2009년 1월 실적저조 등을 이유로 경찰청 콜센터를 통합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통합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음
	시정의견	- 일부 통폐합이 필요한 기관의 조정노력 필요			

6. 기획재정부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	WCO분담금 (일반회계) (294백만원)	문제점	- 4년 평균 집행률이 60.8%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예산이 2008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 2008년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분담금의 부분납부도 곤란한 상황에서 이월을 결정 - 향후 당해연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확보할 계획임	【동의】 - 2009년 7월말 현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69.2%로 4년 평균 집행률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집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의견	-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 편성할 필요가 있음		
2	국가회계 제도 운영 (일반회계) (300백만원)	문제점	- 4년 평균 집행률이 46.9%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예산이 2008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 국가회계법의 제·개정작업 지연, 시행시기 연기 등으로 집행이 부진 -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 예결산 공무원 대상 전문심화교육을 실시 중이며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음	【동의】 - 다만, 2009년 7월말 현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25.2%로 4년 평균 집행률보다 현저하게 낮아,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시정의견	-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 편성할 필요가 있음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3	경제협력 기구 활동 (일반회계) (204백만원)	문 제 점	- 4년 평균 집행률이 45.9%으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	- 양해협정 승인 지연으로 인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으나, 2009년 5월 1일 양해협정에 서명하여, 향후 매년 분담금 납부 예정	【동의】 - 2009년 7월말 현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68.6%로 4년 평균 집행률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집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의견	- 집행실적 제고 필요			
4	균형발전 특별회계 관리 및 제도개선 (일반회계) (497백만원)	문 제 점	- 4년 평균 집행률이 58.9%으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	- 정부조직개편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운용 - 2009년 예산편성시 과거 집행실적을 감안,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는 대폭 축소하여 편성	【동의】 - 다만, 2009년 7월말 현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34.6%로 4년 평균 집행률보다 현저하게 낮아,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시정의견	- 집행실적 제고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5	예산낭비 대응시스 템 구축 및 운영 (일반회계) (2,520 백만원)	문 제 점	- 4년 평균 집행률이 59.7%으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	- 2009년 예산 편성시 예산을 대폭 축소하여 편성함에 따라 향후 집행은 양호할 것으로 사료됨	【동의】 - 다만, 2009년 7월말 현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24.9%로 4년 평균 집행률보다 현저하게 낮아,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시정의견	- 집행실적 제고 필요			
6	국가회계 제도 정비 (일반회계) (175백만원)	문 제 점	- 집행률이 40.9%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며,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사전사업계획이 미비하였기 때문임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점검 등에 당초 예상기 간보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계약기간 을 연장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수정보완 등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한 작업을 착실히 진 행중임	【동의】 - 다만, 2009년 6월말 현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7.4%에 지나지 않아,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시정의견	- 사전 사업계획을 철저히 입안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7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일반회계) (3,980 백만원)	문 제 점	- 당초 예산액보다 예비비 배정이 많은 경우, 향후 본 예산을 적정규모로 편성하고 예비비 사용은 축소	- 이명박정부 공식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신설	【일부동의】 - 새정부 출범으로 인한 조직신설로 예비비가 사용된 것으로 보여짐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취지를 감안하면, 위원회 조직 등의 증설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고, 예비비를 사용하여 정부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것임
시정의견	-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여 집행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8	대개도국 차관 (대외경제 협력기금) (350,000 백만원)	문 제 점	- 집행률이 67.8%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	- 과거 승인 실적 저조, 공개경쟁입찰제도 도입 등에 따른 절차 지연 등으로 집행실적 다소 부진 - 집행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 강구중	【동의】 - 다만, 2009년 7월말 현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31.3%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시정의견	- 집행실적 제고 필요			
9	국공채 인수 (공공자금 관리기금) (600,000 백만원)	문 제 점	- 집행률이 64.1%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	- 일부 지자체의 자체 자금조달 가능 및 부채한도로 인한 추가 지방채 발행 곤란 등으로 지방채 발행수요가 감소 - 지방채인수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소관부처(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조	【동의】 - 다만, 2009년 7월말 현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51.7%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시정의견	- 집행실적 제고 필요			
10	호남권 복합화물 터미널 건설 (공공자금 관리기금) (1,500 백만원)	문 제 점	- 집행률이 0.0%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	- 복합화물터미널 공사 진척률이 저조 - 2009년도 하반기에 전액 집행 예정	【동의】 - 다만, 2009년 7월말 현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0.0%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시정의견	- 집행실적 제고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1	수도권 내륙화물 기지 건설지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7,840 백만원)	문 제 점	- 집행률이 0.0%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	-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불용됨 - 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가 완료(2009.3)되어 실시계획 승인 후 9월경에 전액 집행 예정	【동의】 - 2009년 7월말 현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0.0%로 집행이 전무하지만, 9월에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임
	시정의견	- 집행실적 제고 필요			
12	화물자동차 공동 차고지 건설 (공공자금 관리기금) (1,400 백만원)	문 제 점	- 집행률이 0.0%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	- 용자금융기관(산업은행)의 심사 진행 후 집행예정	【조치완료】 - 2009년 7월말 현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100.0%로 예산액이 전액 집행 완료
	시정의견	- 집행실적 제고 필요			
13	여수산단 주민 이주대책 (공공자금 관리기금) (36,100 백만원)	문 제 점	- 집행률이 0.0%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	- 사업주체(여수시)의 자체 부채한도 초과로 추가 적인 용자금수령이 불가능하여 불용 - 2009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하여 향후 지출계획 없음	【조치완료】 - 2009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
	시정의견	- 집행실적 제고 필요			

7. 국세청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	부산지방 국세청 신축 및 합숙소 확보 (일반회계) (294백만원)	문 제 점	- 4년 평균 집행률이 32.6%으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함	- 신축부지 내 문화재 발굴, 자연재해 및 집단민원 발생 등 우발적 요인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이월액 발생 - 향후 청사 및 합숙소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 정교한 예측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에 따른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동의】 - 부산지방국세청 신축사업의 경우, 2009년 7월말 현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44.8%로 4년 평균 집행률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집행이 과거보다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아직 집행실적이 양호한 수준은 아니므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시정의견	-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 편성할 필요가 있음		
2	공부징취비 (일반회계) (684백만원)	문 제 점	- 4년 평균 집행률이 43.2%으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함	- 공부징취전 자진납부 유도과 수동발급 방식 억제 및 인터넷 열람 활성화로 예산 절감액 발생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공부징취비 절감 가능해짐에 따라 예산 축소 편성	【동의】 - 2009년 7월말 현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22.8%로 4년 평균 집행률보다 낮으며, 불용 발생가능성 높은 상황임 - 불용 발생가능성을
		시정의견	-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 편성할 필요가 있음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감안할 때 예산 축소가 가능해 보임
3	토지 및 주택조사 지원 (일반회계) (460백만원)	문 제 점	- 4년 평균 집행률이 59.1%으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함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의 발생 예상건수 추계차이로 인하여 불용 발생 - 집행실적 부진의 주요요인인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고시 예산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 축소	【동의】 - 2009년 7월말 현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25.0%로 4년 평균 집행률보다 낮으며, 불용 발생가능성 높은 상황임 - 불용 발생가능성을 감안할 때 예산 축소가 가능해 보임
		시정의견	-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 편성할 필요가 있음		
4	전용감 과다	문 제 점	- 예산액 대비 전용감 비율이 2.22%로 타부처에 비해 높은 편임	-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유가환급금 집행업무가 부여되었으나, 이를 위한 예산 및 지급시스템이 전혀 없어 불가피하게 전용하여 사용 - 향후에는 과다하게 전용감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동의】 - 유가환급금 지급을 위한 불가피하게 전용을 실시한 측면이 있어 보임 - 전용이 과다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시정의견	- 전용감이 과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정요구할 필요가 있음		

8. 관세청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 (일반회계) (14,122 백만원)	문 제 점	- 청사확보및시설개선사업은 2008년 25.8%의 이월률이 발생하는 등 2007년 이후 연례적으로 20% 이상 이월률 발생	-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공사개시가 늦어져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나, 향후 사업추진시 사전에 중장기 공사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하여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동의】 - 시정의견을 수용하여 향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시정의견	- 사업수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단계에 따라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고 연내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			

9. 통계청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	인력실태조사 (일반회계) (2,953 백만원)	문 제 점	- 인력실태조사 당초 예산액 573백만원에서 782백만원을 전용증하여 시군구 고용통계조사를 실시하였음. 이는 이·전용의 한계 위반함	- 통계청 인력실태조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와 유사중복통계라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음 - 시군구 단위의 고용통계 작성의 필요함을 인지하고 시도단위로 조사하던 인력실태조사를 시군구단위로 확대하여 전환 실시함	【동의】 -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전용을 통해 시군구고용조사 사업을 실시한 것은 사업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전용의 한계를 위반한 것임
	시정의견	- 국회가 예산을 심의·확정한 이후에는 그 변경을 최소화할 것	- 시군구 고용통계조사의 조사규모가 기존 인력실태조사 대비 24배 확대되어, 동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불가피하게 전용하였으나, 향후에는 사업간 유사성이 부족한 전용은 최대한 자제토록 노력하겠음		

10. 외교통상부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	국제교류 재단이관 사업 (일반회계 →국제교 류기금) (7,200 백만원)	문 제 점	- 국제교류기금으로 이관한 사업들 중 일부는 외교통상부가 직접 수행하는 등, 비용만 기금에서 마련하는 형태 지양 필요	- 이관사업 선정 시 국제교류재단의 설립취지, 집행능력, 기금의 재원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왔음 - 2010년도 예산안 편성 시 국제교류재단 초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마련할 예정	【일부동의】 - 향후 적절한 사업만을 이관할 계획임을 표명
		시정의견	- 사업이관 시 적절한 검토 및 국제교류재단이 수행가능한 사업만 이관 필요		
2	소속기관 기본경비- 재외공관 행정지원 인력운용 (일반회계) (51,978 백만원)	문 제 점	- 감사원 감사결과 영사전문보조원 및 재외공관 요리사의 일부 불필요한 증원·채용이 지적됨	- 영사전문보조원의 채용은 수준높은 영사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불필요한 인력증원이 아님 - 국회 및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영사전문보조원 감원 및 정규 행정원으로서의 전환 완료 -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2009년도 본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음	【동의】 - 2009년 8월 현재 영사전문보조원의 감원 및 정규 행정원으로서의 전환이 완료된 상황임
		시정의견	- 불필요한 인력증원 등 예산낭비를 없애고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 방안을 마련할 것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3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 (일반회계) (1,151 백만원)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을 '영사협력원 인건비' 등 사용가능한 용도 외로 집행 - 수입대체경비 수입유형(여권발급수수료, 영사서비스수수료)을 구분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사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대체경비를 영사협력원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은 타당함 - 동 사업의 '순회영사여비'는 비목상 '국외여비'에 해당하지만, 그 성격이 재외공관 관할지역 출장 비용이므로, 「국가재정법」시행령이 정한 의도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 	<p>【수용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대체경비로 사용가능한 인건비는 일시적 업무 급증으로 인한 일용직에 한정되는데, 영사협력원 인건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정 필요 (감사원. 2009. 2 같은 의견의 감사결과 발표) - 예산안 편성 시 '순회영사여비'를 적절히 편성하여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일 것임 - 현재에도 여권발급수수료와 영사서비스수수료는 구분하여 금액을 관리하고 있으며, 타 부처는(예: 행안부) 수입대체경비 수입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4	외교활동비 (일반회계) (13,551 백만원)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활동비 비공개의 법적근거가 미흡하며 일부 목적 외 사용 사례가 감사원에 의해 지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활동비 집행내역이 공개될 경우, 대외보안 유지가 필요한 외교활동 내역이 노출되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 	<p>【일부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 감사 시에는 외교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제출한 바 있으므로, 국회에 대해서도 비밀 노출을 방지하면서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 마련 필요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활동비의 구체적인 편성·집행내역을 국회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안유지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공개하는 등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음 - 2009 회계연도부터 외교활동비 집행내역을 재정리하여 국회에 정보제공 및 열람이 가능한 적절한 방안 강구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5	여권발급 (일반회계) (58,201 백만원)	문 제 점	- 여권발급 사업비를 절감한 뒤 절감액을 환율상승 부족경비 등에 사용하였으나, 여권발급 사업에는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을 사용하여 여권발급 초과지출승인액을 실질적으로는 타 사업에 사용한 결과를 가져옴	- 2008년 예산총칙 상 '환율상승으로 인한 경비부족', '인건비 부족'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여 집행한 것임	【수용불가】 - 이용절차 자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쳤으나, 수입대체경비 사업비를 예산절감·이용감액한 이후 발생한 예산부족분을 초과수입으로 충당하였다는 점을 지적 - 향후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예산절감사업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해당사업비를 이·전용 감액하여 타사업에 사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
시정의견	- 수입대체경비 사업 예산의 이용감액을 통한 타 사업에의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 사용이 예상되는 여권발급 사업 등을 예산절감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				
6	수입대체 경비 지정사업 (일반회계) (78,390 백만원)	문 제 점	-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을 상반기부터 집행	- 향후에는 초과수입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그 발생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점부터 초과지출하도록 시정하겠음	【동의】 - 향후 시정의견에 따라 조치할 것을 표명하였으며, 2009년 6월까지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승인액이 없었음
시정의견	- 초과수입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그 발생이 충분히 예상가능한 시점부터 초과지출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 요건이 성립되기 어려운 상반기부터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7	재외동포 재단 지원 (국제교류 기금) (20,000 백만원)	문 제 점	- 국제교류기금의 재외동포재단 지원은 기금의 설립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 재외동포재단 예산을 정부출연금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 - 다만 이를 위해서는 예산당국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향후 협의 계획	【동의】 -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원 일원화 지적에 공감하여, 향후 기획재정부와 관련 협의를 추진할 계획임
		시정의견	-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국제교류기금의 지원을 줄여나가고, 재외동포재단 지원을 정부출연금으로 일원화할 것		
8	면허료 및 수수료 (일반회계) (139,340 백만원)	문 제 점	- 면허료 및 수수료에서 과도한 초과수납액이 발생	- 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을 매년 상향 책정하여 연례적인 과소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동의】 - 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액 현실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권사업의 세출예산액이 부족한 현실적 여건 하에서 일부 초과수납액의 불가피성을 설명 - 향후 적정한 세출예산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수입대체경비 수입예산액의 현실화 도모 필요
		시정의견	- 2010년도 예산안 편성 시 면허료 및 수수료의 세입예산액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초과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	- 여권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입예산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음	

11. 국방부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	연도말 전용감액 (일반회계) (69,755 백만원)	문 제 점	<p><연도말 전용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말 전용감액의 규모와 비율이 대단히 큼 - 11-12월 전용감액이 697억원 5,00만원 발생(전용감액의 80.5%) 	- 소관부처(국방부) 답변 누락	<p>【답변회피·누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을 위해 국방예산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불용액을 적게 하려는 비정상적인 예산운영 행위이므로 특별관심이 필요함 			
2	사관학교 (일반회계) (43,000 백만원)	문 제 점	<p><육·해·공군 사관학교 예산관리체계 부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및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사관학교의 예산편성 및 운영 체계가 각 군별로 3軍 3色이며, 국가재정법 위반사항 (기관별 예산편성 위배)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편성기관과 집행기관이 달라 편성과 결산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 소요제기부터 집행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해당 학교에서 처리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심층 검토 후 일원화의 방안을 강구 - 기관별 예산편성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맞지 않으므로 심층 검토하여 적정 방안 강구 	<p>【일부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가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적된 문제는 국방 예산체계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문제임 - 국방 예산편성 및 운영 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 이외, 단기적으로 시정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전혀 시정의 의지가 없으므로 국방부의 적극적인 시정조치 요구됨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원칙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관별 예산편성과 사관학교 예산관리 체계의 일원화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3	육군 장비유지 출장여비 (일반회계) (698백만원)	문 제 점	<육군 장비유지 출장여비의 연례적 부족> - 현장 정비의 출장비가 부족하게 지급되어 상당수의 하급간부들이 출장 경비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음	- 경상경비 절감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정비활동 여비를 세분화하고, 이동정비여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함	【동의】 - 증액 소요(3억원)가 크지 않으므로, 단계적인 현실화보다 2010년 도 예산에 전액 반영함으로써 현실화가 가능함															
		시정의견	- 2010년도 예산편성시 3억원 증액 필요 - 5군과 2군지사의 '이동정비감독' 출장여비에 대한 우선적인 예산배정이 요구됨																	
4	전직지원 (일반회계) (9,239 백만원)	문 제 점	<국방취업지원센터 접근성 부족> - 국방부의 취업지원센터는 서울(용 산) 한 곳밖에 없어 사용자 불편 이 발생하고 있음	- 제대군인지원센터(보훈처)에 각군 소속 전직지 원상담관을 확대 운영조치하였음(1명 →4명)	【동의】 - 외형적인 조치도 필요하 지만, 국방부와 국가보 훈처의 센터통합 및 공 동운영 등 사용자 중심 의 전직지원을 위한 실 제적인 후속조치가 추가 적으로 필요함															
		시정의견	- 최소비용으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측면에서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센터(5개소)와 국방부의 취업지원센터(서울 1개소)를 통합 및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table border="1"> <tr> <td>2009.7 이전(1명)</td> <td colspan="4">2009.7월 이후(4명)</td> </tr> <tr> <td>대전</td> <td>대전</td> <td>부산</td> <td>대구</td> <td>광주</td> </tr> <tr>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r> </table>	2009.7 이전(1명)	2009.7월 이후(4명)				대전	대전	부산	대구	광주	1	1	1	1	1	
2009.7 이전(1명)	2009.7월 이후(4명)																			
대전	대전	부산	대구	광주																
1	1	1	1	1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5	총액계상 각군 의무장비 (일반회계) (17,372 백만원)	문 제 점	<각군 의무장비사업의 총액계상 지정사유 소멸> - 총액계상사업은 예산의 자의적 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 이미 2010년도 국방예산안 편성시 각군 의무장비 획득은 총액계상사업에서 지정을 해제하였음	【조치완료】
	시정의견	- 의무장비사업을 총액계상 사업에서 지정해지 필요			
6	장교인건비 (일반회계, 3,216,900 백만원)	문 제 점	<장교증원의 타당성 미흡> - 장교유지비용은 국방 인건비의 압박요인 - 경직성 경비이며 의무지출인 장교유지비용은 국방 인건비의 39%를 차지하고, 1인당 연유지비는 평균 4,600만원임	- 장교증원 계획 추진 중단 - 국방개혁 목표연도 정원설계(안) 검증 - 전투부대편성 완전성 보장을 위한 비전투부대 효율화 추진	【동의】 - 인력운영의 효율화와 인건비 최소화가 지속적·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객관적이면서도 상시적인 전문 조직진단 및 조직평가조직이 필요함
	시정의견	- 장교증원보다는 현 정원의 타당성 검증과 비전투부대 효율화 등 장교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임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7	인건비 (일반회계) (8,357,300 백만원)	문제점	<p><국방분야 인건비 비중의 과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비의 32%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의무지출이고 경직성 경비여서, 방위력개선, 국방 연구개발, 전력유지비 증액의 여력을 제한하는 등 국방예산운영의 유연성을 제약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구조개편, 정원운영의 효율화, 조직진단 등을 통한 비전투부대의 인력감축, 집행분석을 통한 적정규모의 예산편성으로 인건비 절감 침 최소화 추진, 진급공석 통제 강화, 계급별 진급발령기기 조정, 명예전역 활성화 등 추진 	<p>【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운영의 효율화와 인건비 최소화 노력이 지속적·전문적·체계적으로 구현되도록 상설 및 전문적인 조직진단 조직이 필요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 인력운영의 효율화와 인건비의 최소화 노력 필요 				
8	국방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26,989,549 백만원)	문제점	<p><국방중기계획의 연례적인 과다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국회의 확정예산보다 평균 5,000억원을 초과한 중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방예산이 비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 결과적으로 군의 사기저하, 전투준비태세 약화 그리고 첨단군사력 건설의 지연이 초래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국방부는 재정당국과 국회가 납득할수 있도록 필수소요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할 것임 - 국방중기계획은 국방부 고유의 계획문서이자 부처 중기예산 요구안이므로 현재와 같이 대통령 승인 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할 것임 	<p>【일부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의견의 핵심은 국회와 사전협의 과정을 통해 국방중기계획의 연례적인 과다편성의 부작용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국방부는 문제점은 인정하나 중기계획 수립절차의 개선에는 시정의견이 없음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부담 능력 범위 내에서 국방중기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방중기계획의 확정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할 필요가 있음 				

연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9	군수정보 체계 (일반회계) (9,570 백만원)	문제점	<p><군수정보체계사업 후속 인력·업무 조정 부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수정보체계가 가동됨에 따라 인원 재배치 및 업무 재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나, 체계구축 전·후에 인력운용의 변화가 없음 	<p>- 국방개혁 추진계획의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군수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통폐합에 따른 업무이관 및 조정, 인력 재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음</p>	<p>【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국방부는 문제점을 인정하나, 국방개혁과 연계한 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함으로써 시정조치를 지연하고 있음 - 국방개혁과 연계하지 않고도 시정조치가 가능한 영역이 엄정히 존재하므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함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력운영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조사·평가하고, 부적격 군수군무원의 업무조정 및 재배치를 실시하는 등 국방 군수인력 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함 												
10	군수정보 체계 (일반회계) (9,570 백만원)	문제점	<p><군수정보체계사업의 200억원 예산 낭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수통합정보체계사업을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명확한 이유가 없이 4개로 분리하여 육군, 해군, 공군, 국방부의 개별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비용이 중복적으로 지출되어 약200억원 낭비 	<p>-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개념연구 결과, 각 군별 분리개발이 국방부 주도 통합개발보다 182억원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됨</p> <table border="1" data-bbox="1012 1034 1666 1107"> <thead> <tr> <th></th> <th>통합 개발</th> <th>분리 개발</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금액(억원)</td> <td>495</td> <td>313</td> <td>182</td> </tr> </tbody> </table> <p>(근거: 2003.6.28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체계통합 종합계획서, 개념 연구: 삼성SDS, KCC, 대우정보, 현대정보기술 컨소시움)</p>		통합 개발	분리 개발	비고	금액(억원)	495	313	182	<p>【수용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업체가 수행한 2003년도 개념연구 결과를 근거로 오히려 예산절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프로그램개발, DATA엔진, Main컴퓨터, 상용 SW, 보안시스템 구입비용등이 중복지출 - 근거자료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재발방지와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함
	통합 개발	분리 개발	비고										
금액(억원)	495	313	182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체계 중복개발에 따른 예산낭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조치가 필요함 												

12. 방위사업청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	연구개발비 (일반회계) (1,626,200 백만원)	문 제 점	<p><국방연구개발비의 축소와 정책후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 연구개발투자의 지출과 예산계획이 2006년 계획과 대비하여 점차 하향 조정(증가율 3%p 하향, 약 2,400억원 축소) 되고 있음 - 연구개발 후퇴는 방위사업청의 '국방 R&D 강화'와 '방산 신성장동력화' 정책'과 배치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가 계획보다 낮게 확보되거나 배분된 것은 경제난 등으로 국방재원 여건이 악화된 것에 기인함 - 연구개발 투자 목표 수준이 하향 조정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R&D 투자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p>【일부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 축소의 원인을 '경제난'과 '국방재원부족'으로 전가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사유는 무기획득 사업에 우선적인 예산배정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 국방재원이 제한적이더라도 미래를 위한 기술개발에 소극적인 것은 시정이 필요함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군사력을 건설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은 '2010년도 방위사업청 예산안의 연구개발비를 증액 편성하는 시정조치가 필요함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2	시물레이터 (일반회계) (47,400 백만원)	문 제 점	<p><시물레이터사업의 중소기업체 차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한 기능의 군수물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담의 시물레이터의 경우에는 일반물자로 지정하여 원가보상을 일반 노무비 기준을 적용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시물레이터에는 일반물자로 지정해놓고도 방산물자 원가를 적용하여 일반 노무비의 3배를 지불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집행 과정에서 대-중소기업가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방산분야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2002년 이후(국방부, 방위사업청) 일관되게 방산물자 지정의 일관성을 견지하고 있음 	<p>【수용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차별적인 '원가보상'인데,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 지정의 일관성을 언급함으로써 東問西答하고 있음 - 방위사업청은 정책적으로는 중소기업에 적극지원을 천명하면서도, 일선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가보상을 차별하고 있음 - 재발방지와 원인 및 사실 규명이 필요함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체에 대한 차별대우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의 감사원 감사청구와 시정조치가 필요함 				
3	연도말 전용감액 (일반회계) (99,526 백만원)	문 제 점	<p>< 연도말 전용감액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말 전용감액의 규모와 비율이 대단히 큼 - 11-12월 전용감액이 995억원 2,600만원 발생(전용감액의 7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처(방위사업청) 답변 누락 	<p>【답변회피·누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액의 연도말 전용감액이 환치손보전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특수성이 인정됨 -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환치손보전 대책이 필요함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불용액을 적게 하려는 비정상적인 예산운영 행위이므로 특별관심이 필요함 				

13. 병무청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	병무행정 정보화 (일반회계) (2,953 백만원)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용 한계 위반> - 인건비 중 11억 4,000억원을 정보화사업에 전용함 - 기획재정부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규정한 전용 한계를 위반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법 제46조 및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전용 한계 위반이 아님 	【수용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한계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므로 2010년도 예산편성시 반영 필요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시 목적 외 사용금액만큼 조정 필요 			

14. 행정안전부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	고 위 공 무 원 단 후 보 자 교육 (일반회계) (918 백만원)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70%미만, 2006~2008년까지 집행실적(66.7%) 부진 -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2009년도 예산이 2008년보다 증액 편성(1,13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초과현원 발생으로 교육수요가 감소하여 집행부진 - 집행실적이 부진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예산이 2009년 예산에서 증액된 사유는 2009년도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예산에는 본부에서 별도사업으로 편성·운영하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역량평가' 사업비 예산이 통합편성된 것임 - 2009년 동 사업비 편성예산 중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예산은 2008년에 비해 461백만원이 감액된 457백만원임 	【동의】 - 행안부는 2010년부터 예산요구안에서 동 사업예산을 308백만원으로 감액조치하고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역량평가예산'을 '고위공무원단제도운영(2009년 예산 844백만원, 2010년 요구안 1,064백만원)' 사업으로 편입시킴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은 예산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킴 -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비를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축소 편성하는 것이 필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 2009년 예산편성내역>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2009년 예산</th> <th>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th> <th>고위공무원단 후보자역량평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136백만원</td> <td>457백만원</td> <td>679백만원</td> <td>08년 대비 461백만원 감액</td> </tr> </tbody> </table>	2009년 예산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역량평가	비고	1,136백만원	457백만원	679백만원
2009년 예산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역량평가	비고								
1,136백만원	457백만원	679백만원	08년 대비 461백만원 감액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2	기록물 효율적 관리 (일반회계) (15,100 백만원)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에서 예비비 5억원을 배정받았으나, 40.7억원이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고 17.3억원이 불용됨, 특히, 예비비 4.7억원이 배정된 운영비 비목에서 16.2억원이 타 사업으로 전용되고 10.4억의 불용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비 5억원은 '건국 60주년 기념 국가기록 특별전'개최를 위한 것으로 당초에는 자체예산(1.8억원)으로 '서울 전시'만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본 특별전이 '건국 60년 기념사업 60선'에 선정(5월)되면서 타 지방 순회전으로 확대 - 예비비 신청당시(5월) 국가기록원 예산 절감액 중 활용액 전액(43.2억원)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폐지기관 이관기록물 정리사업 등으로 활용하기로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건국 60주년 기념 국가기록 특별전'개최에 예산 절감액을 활용할 여지가 없었음 - 불용액 17.3억원은 공공요금 집행잔액 및 연구개발비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발생 예측이 곤란하였기에 발생하였음 	<p>【일부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절감액 활용액의 사용용도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예비비 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되지만, '건국 60주년 기념 국가기록 특별전'과 같은 대규모 행사에 대한 예산편성상의 사전검토 필요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의 지출소요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전용·조정을 통해 충당하도록 하고 예비비는 그 지출이 시급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3	공무원후생 복지지원 (일반회계) (3,308 백만원)	문 제 점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단위사업내 운영비 비목에서 541백만원의 불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301백만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비 활용내역 : 고유가시대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기 위해 차량2부제에 따른 통근버스 확충 및 기존 통근버스에 대한 유가 인상분을 추가보전을 위해 예비비 활용(통근버스 증차 30대, 유가인상 1,400원→1,900원) - 예비비 지원시점(2008.9.5)에는 공무원후생복지지원 단위사업내 타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사용계획이 있어서 활용하지 못함 - 불용사유 :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지연으로 미집행, 공무원단체 건전육성은 교섭지연으로 미집행, 공무원 통근버스는 증차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미집행 	<p>【일부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사업인 통근버스 운행을 청사관리프로그램의 단위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 - 통근버스 확충 및 유가변동분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예비비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음
		시정의견	-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의 지출소요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전용·조정을 통해 충당하도록 하고 예비비는 그 지출이 시급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4	특별교부세 (일반회계) (946,808 백만원)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각 지자체가 교부받고 이를 교부조건이나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감사원에 의해서 지적됨 - 「지방교부세법」시행령상 특별교부세 용도의 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은 용도의 사용분 반환과 다음연도에 교부할 특별교부세의 감액인 바, 특별교부세의 용도의 사용에 대한 벌칙으로서는 엄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 소관부처 의견 회신이 없었음	【답변회피·누락】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엄격하게 지자체의 특별교부세 용도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용도의 사용이 지적된 지자체에 대하여 다음연도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수요에 대한 교부신청을 제한하는 것을 「지방교부세법」상에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음(법률 개정사항) 				

15. 경찰청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	이·전용을 통한 신규사업의 추진 (일반회계)	문 제 점	- 이·전용을 통해 당초 예산상 계획에 없던 화성서부서 임시개서, 상설부대 숙소 임차료 등에 집행	- 대규모 상황 발생시 장기간 타시도 지원근무를 할 경우 인근 체육관 등을 숙소로 이용하여 왔으나, 최소한 혹서·혹한기에는 적절한 숙소제공이 필요하여 전용을 통해 상설부대 숙소임차료를 반영한 것임	【일부동의】 - 2009년에는 본예산에 상설부대 숙소임차료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년 예산요구안에도 동액을 반영함으로써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보하려 하고 있음. 다만, 향후에도 예산절감을 추진할 경우 절감예산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절감한 예산을 불용처리하도록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시정의견	- 이·전용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임의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2	연도말 전용감액 과다	문 제 점	- 경찰청은 연도말 전용감액(285억원), 연도말 전용감액의 비율(44%), 전용감액의 규모(649억원)모두 상당히 큼	-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소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예산을 편성목적과 어긋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음	【동의】 - 다만, 연도말 전용감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계획이 없으며, 일부 연도말 전용감 사업은 2010년도 예산을 오히려 증액하여 요구하고 있는바, 2010년도 예산안 편성시 연도말 전용감 실적을 반영하도록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시정의견	- 2010년도 예산안 편성시 2008년도 연도말 전용감 실적을 반영하여 계상할 필요가 있음				

16. 교육과학기술부

연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	생명공학 육성 관련 (일반회계) (365,237 백만원)	<p>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공학육성 시행계획에서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에 대한 평가가 부족 - 민간투자 목표의 설정이 무리한 수준이며,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점검이 부족 <p>시정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계획 수립이 성과평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기본지침에 반영할 것 - 민간투자 유도 방안이 시행계획에 포함되도록 기본지침에 반영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도 시행계획부터 전년도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 및 사업 평가 결과가 투자 계획 시 환류될 수 있도록 작성할 계획임 - '10년도 시행계획부터는 각 부처의 사업에 대한 전년도 민간 투자 실적 및 차년도 민간투자 유도 방안 등을 추가할 계획임 	【동의】
2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 (일반회계) (150억원)	<p>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이나, 유치지역지원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률이 55%로 높음 - 지방비 부담 조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유치지역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하고 있음 <p>시정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지방비 부담률의 조정 및 국비지원 주체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약에 따라 경주시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추가지원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재정규율의 준수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 발생 - 다만, 국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연계사업으로 추진되는 점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비지원 여부 등 유치지역위원회(위원장: 지식경제부 장관) TF에서 검토된 사항을 확정하고 지자체는 자구노력을 통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수용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해결을 미루는 상황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유치지역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이라는 답변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 - 지방비 부담 조정안과 관련된 부처가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3	이공계 인력관리 특별지원 사업 (일반회계, 과학기술 진흥기금) (600억원)	문제점	- 과학기술인이 퇴직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0억원을 목표로 재원을 조성중이나, 조성 및 운용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 필요	-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공제회법 개정시('09.1.7 공포) 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음 - 또한 공제회는 예·결산에 대하여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재원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 국회 업무보고,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등을 통해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음	【수용불가】 - 공제회의 업무보고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에 대한 상세 내용이 포함되기 어려우며, 국정감사·감사원감사는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이므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재원에 대한 별도보고 의무화가 필요
시정의견	-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재원의 운용계획안 및 결산 내역을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4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 (일반회계) (1,404억원)	문제점	-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의 연구성과 확산 및 활용제고는 관련 사업단이 속한 기관의 기술 이전담당 조직에서 수행 가능	- 관련 사업단과 연계 또는 특성화 지원으로 성과확산 및 활용 제고 노력 중 - 대형연구사업 성과측정모델 개발·적용과 연계한 추적관리는 시범 추진중 -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자료 수집·사후관리·활용을 촉진하는 등 특화방안 마련 예정	【동의】
시정의견	- 연구성과지원센터는 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성과 자료의 수집 및 추적관리 기능으로 특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5	지방교육 재정 특별 교부금 (일반회계) (1,169,891 백만원)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교부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재량에 따라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 활용할 여지가 크지만, 교부현황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도에 오히려 많이 배부되는 경향을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차상위 무료급식 확대,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농산어촌 교육복지사업,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원사업 등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사업에 특별교부금의 상당재원을 지원하는 중 - 시·도 교육청에 균등배분하는 '기본교부액'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신설비를 제외한 금액의 비율에 의거하는 '비율교부액'의 합산을 기준으로 특별교부금 교부액을 산정하여, 지역교육현안사업의 균형 있는 배분을 기하고 있음 	<p>【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내용과 교부액 산정 방법이 시정요구 취지 수용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사업(예: 차상위 계층 무료 급식 확대)에 특별교부금의 상당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 				
6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일반회계) (33,209,014 백만원)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도 세계잉여금에 의해 발생한 2조 4,542억원이라는 대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재정과정을 거치지 않음 - 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대상사업과 유사한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보통교부금 정산분을 지원하여 교부금의 목적 외 사용 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도 세계잉여금 정산은 새 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경제활성화 및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교부된 교부금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교육감에게 있는 것임 - 세계잉여금 정산에 대해서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배분기준 및 용도에 대해 성실히 보고 예정 	<p>【일부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요구 시 성실히 보고하겠다는 의견은 시정 요구를 수용한 것 - 특별교부금을 사업취지와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하는 책임은 최종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있는 것이므로 부적절한 해명임 - 교육감의 자체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는 교부관행 개선 필요 - 국회의 사전통제 가능하도록『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개정 필요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법」 제0조의 적용을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세계잉여금 선정산 시 배분내역, 배분금액, 집행실적 등 주요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문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7	세계수준 연구중심 대학 육성사업 (일반회계 및 균특회계) (165,000 백만원)	<p>문 제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의 임의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은 부처통합 이전에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 1,000억원과 '지방대학특화분야 육성사업' 400억원, 과학기술부 예산에 편성되었던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 250억원을 합쳐서 1,650억원을 집행한 것임 ◦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1,000억원)'은 대학단위 지원 및 자율재정운영방식을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를 임의로 해외 연구인력 영입관련 과제단위 지원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지방대학특화분야육성사업(400억원)'은 지역의 특화분야와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전혀 다른 내용의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사용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의견 미제출 	<p>【답변회피·누락】</p>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과목의 임의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의 예산은 당초에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정산이 면제되는 등 집행이 용이한 출연금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음 - 국가재정법 제 40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 예산심의는 사업의 규모뿐만 아니라 내용, 예산과목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정책결정과정이므로,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변경하거나, 예산과목을 임의로 집행이 용이한 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훼손시키는 것이며, 예산을 국회가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임 - 실집행률이 68.0%로 부진하여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불일치함, 결국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국회의 성과평가가 어려워짐 - 재정사업의 수혜자인 대학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관리규정(훈령)에 사업연도 기간을 연차적으로 축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년도 : 2008. 12- 2009. 10 · 2차년도 : 2009. 11- 2010. 9 · 3차년도 : 2010. 10- 2011. 8 	<p>【일부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연도 축소가 9월 기준으로 반영되어 조치 미흡 - 예산규모나 비용지출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p>간접비 과다 지원(전체 사업비의 23.1%, 323억원)</p> <p>시정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및 예산과목의 임의변경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한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2010년도 예산안 심의시까지 소관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 - 예산 편성시 예산 규모나 비용 지출 조정 등을 통해 회계연도와 사업연도의 불일치 해소시키려는 노력 필요 - 사업 유형별로 간접비를 산정하여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 - 대학도 일정 비율의 대응자금이나 사업성과 부진 시 사업비를 분담하여 사업의 책무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도록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년도 : 2011. 9- 2012. 8 · 5차년도 : 2012. 9- 2013. 8 - 2009년 간접비 비율은 직접비+인건비의 20%를 기준으로 하여, 2008년(30%) 대비 1/3 삭감하여 지원 - 2009년 연차평가 시 대학의 간접비 집행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년도 간접비를 차등 교부 	<p>조정 등과 관련된 개선대책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비 지원비율 하향조정은 시정의견을 수용한 것이나, 사업유형별 지원기준 마련 조치 등은 부재 - 사업비 집행 및 성과 전체에 대한 대학의 책임성 제고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간접비 관련 조치만 취하여, 시정요구 취지에 미흡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8	유아 교육비 지원사업 (일반회계) (226백만원)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청의 결산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정확한 수용예측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실제 교부금 배분기준이 불분명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예산심의상 문제가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이용시설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수용예측에 한계가 있으나, 취원을 추이 및 지원대상 확대 등을 고려하여 정확히 추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유아교육력 지원비는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매뉴얼」에 따라 지방비 사업으로 이관하였고, 「2009년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에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 향후 집행실태 조사(분기별 혹은 반기별)를 통해 사후 집행관리 강화해 나가겠음 	<p>【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수요예측에 한계가 있는 것은 인정되며, 사후 집행실태 조사철저 등 사업과정 전체에 걸친 지속적·제도적 보완 필요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자료에 기초하여 기준재정수요액 책정 필요 - 지방 이양된 유아교육사업의 지역별 집행실태와 성과를 평가하여 국회 보고 필요 				
9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균특회계) (246,300 백만원)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및 예산과목의 임의변경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한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2010년도 예산안 심의시까지 소관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 - 예산 편성시 예산 규모나 비용 지출 조정 등을 통해 회계연도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여 2009년도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장학금의 비중은 19.8%로 조정(NURI 사업 3차년도 장학금 지급비율은 26.6%였음) - 재정지원과 시간강사 처우개선 간의 연계방안에 관해서는 관계 전문가 및 대학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적으로 검토 진행 예정 	<p>【일부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장학금 상한선 설정 관련 조치는 미흡하며, 재정 지원 후 대학이 자체재원으로 마련하는 장학금의 비중 변화 점검 필요 - 교육역량강화 사업목적에 위한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사업연도의 불일치 해소시키려는 노력 필요 - 사업 유형별로 간접비를 산정하여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 - 대학도 일정 비율의 대응자금이나 사업성과 부진 시 사업비를 분담하여 사업의 책무성과 계속성을 보장하도록 개선 필요		전반적인 제도개선은 미비 - 시간강사 처우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노력이 요구됨
		시정의견	- 장학금 비중이 과다하지 않도록 상한선 책정 필요 - 대학의 교육역량강화를 위해 시간강사 법적지위 안정화 및 처우개선과 같은 항목에 예산 할당 필요		
10	국립대학 공간채산제 (일반회계) (700백만원)	문 제 점	- 연구개발비 집행 잔액 발생으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며, 2008년 실적행률은 3.3%로 저조	- 2008년 1월 감사원 결산 감사 지적에 따라, 국립대학 공간채산제 사업비 7억원 중 최소한의 평가지표 연구 개발비 30,000천원을 제외한 금액은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 국립대학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비로 전용하였음	【수용불가】 - 원 사업과 사업 목적이 다른 항목으로 전용한 것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 - 사전계획 미흡으로 인한 집행 부진 지적에 대한 시정조치 결여
시정의견	- 향후 사전 계획 철저를 통해 예산불용 및 전용이 과다하지 않도록 노력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1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기금) (6,929,803 백만원)	문 제 점	- 2007년도 자금운용실적 대비 2008년도 실적 대폭 악화 < 2007년도(실적) > · 수익액 : 6,170억원 · 평잔수익률 : 9.76% < 2008년도(실적) > · 수익액 : -2,857억원 · 평잔수익률 : -4.07%	- 2008년도 자금운용실적 악화는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것으로,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 계획 수정 및 합리화(2008. 12), 각종 리서치 기능 기반 구축, 자산운용부문 프로세스 개선 및 기타 전문성 제고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도 강화 중	【동의】 - 자산 운용 실적 저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개선 조치 내용들은 국회의 지적사항을 대부분 수용
	시정의견	- 자산운용관리 철저, 전문성 강화 및 위험대응체계 구축 필요			
12	사립학교 교직원연 금기금 (기금) (6,929,803 백만원)	문 제 점	- 2008년도 말 현재 사학연금기금 부담금채납 194개 기관 중 유치원이 95.9%(186개)이며, 채납총액 20억 8,752만원 중 유치원이 44.4%(9억2,399만원)를 차지	- 현재 매년 ‘채납부담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2008. 12)’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유치원장을 대상으로 한 부담금 납부 중요성 사전 교육 실시, 부담금 자동이체 납부 시스템 활용 유도, 채납 시 유치원에 대한 납부독촉, 고질적인 채납기관에 대한 연금법 적용대상기관 취소 등을 추진 중	【동의】 - 채납 이전부터 채납 이후까지 단계별로 각종 조치를 마련함, 유치원 부담금 채납의 구조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추가 필요
	시정의견	- 향후 임의적용기관인 유치원의 지속적인 증가(2008년도에 전년대비 전체 교직원 수 증가율이 2.3%이나, 이 중 유치원의 교직원 수 증가율은 10.3%)로 채납기관수가 많아질 것에 대비하여, 부담금 채납 예방대책을 마련·시행할 것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3	사립학교 교직원연 금기금 (기금) (6,929,803 백만원)	문 제 점	- 연금수급자 및 수급기간 증대에 따라 향후 사학연금 재무건전성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재무건전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비용부담률 인상, 연금급여지급률 하향 조정, 연금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학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이 2008. 11. 28. 국회에 제출 - 적정한 책임준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기준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국가회계법의 시행에 따른 정부의 추진계획(연금회계준칙의 제정)에 맞추어 적극 대응하도록 할 계획임 - 사학연금 제도개선 이후 실제적인 급여지출 증가추세를 분석하여 재해보상부담률 인상을 비롯한 제도의 근본적 개선 방안 검토 예정 	<p>【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연금의 재무건전성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임이 인정되나, 보다 면밀한 대책 마련 노력 필요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의 재무건전성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적정한 책임준비금 산정 및 확보방안 마련 - 재해보상부담금 부담률 조정 등 재해보상제도의 운영상 문제개선을 위한 대책 추가 필요 				
14	정부초청 장학생 교류지원 사업 (책특회계) (18,482 백만원)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적인 예산증가로 신규초청인원을 급격히 증가시켰으나, 사업 확대에 대비한 충분한 사전준비 및 재외공관에 대한 안내 제공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사업진행 부진, 사업일정 지연 및 목표치 미달성 문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재외공관 추천방식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나, 대학에 추천권을 부여하여 추천채널을 다양화 하고, 지원자 POOL 확대 시도 - 모집 공고시 재외공관 외에 대학 및 주요연구기관 홈페이지에 탑재, 대학 및 주한외국공관 업무관계자 협의회 구축 등을 통하여 사업 홍보 강화 	<p>【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채널 다양화와 홍보 강화 조치는 수용 - 다만, 한국어 연수 강화 등 장학생 선발 후 관리 개선 대책은 미흡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시정의견 - 장학생 선발 및 관리의 체계적인 수행, 초청국가 및 위탁기관의 다변화, 선발된 학생의 한국어 연수 기간 최소화 및 효과적인 한국어 연수 등을 실시할 것		

17. 문화체육관광부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	여가문화 활성화 (일반회계) (18백만원)	문 제 점	- 여가문화활성화 예산으로 '국립현대사박물관건립 기본구상연구용역'에 집행	- 국립현대사박물관건립사업이 2008년 8.15대통령 경축사를 계기로 핵심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여가문화활성화' 사업 용역비에서 "현대사박물관 건립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음 - 동 연구용역의 수행결과는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음	【동의】 - 재발방지 노력 필요
	시정의견	- 당초 목적인 사업내용에 맞는 예산 집행 필요			
2	국립예술 단체 공연연습장 건립 (일반회계) (2,633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연례적 이월, (2008년 2,025백만원 이월, 5백만원 불용)	- 서울시 부지교환 및 서초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등으로 발주 지연되었으나, 2009년도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동의】 -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2009년 7월말 현재 8억 1,500만원만이 집행되는 등 여전히 집행이 부진
3	콘텐츠해외 진출지원 센터 (일반회계) (1,312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2008년 전용을 통한 사업추진 및 사업기간의 회계연도 불일치 - 2008. 9월~2009. 4월까지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이 불일치	- 핵심 국정과제로 '문화콘텐츠 집중육성 및 투자확대'가 선정됨에 따라 기재부와의 협의를(2008.4~)를 통해 2008년 절감예산을 전용 및 조정하여 사업 추진 - 전용 승인이 8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을 다음해 4월까지 책정 - 2009년 사업부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사업이 12월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함	【동의】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4	DC제작 활성화 (일반회계) (5,200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으로 국회 예산심의 및 확정권을 저해하였으며, 사업의 실제 수행기간과 회계연도가 불일치하여 실집행실적이 저조 -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총괄적 평가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전용은 정부예산 절감방침에 따라 절감액을 시급한 국정과제 수행에 활용하였으나, 향후 가능한 한 국회 확정안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 - 차세대 융합형콘텐츠 육성전략은 '08.10월에 수립되어 시행초기이므로 향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사업평가를 철저히 수행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을 적정하게 수용하였음 - 재발방지 노력 필요
5	SW지재권 영구보존 환경구축 (일반회계) (2,660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은 국회의 예산심의 및 확정권에 제약을 가하는 일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예산10% 절감지침에 따라 절감된 예산에 대하여 타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저작권위원회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기관통합 등을 고려, SW지재권 보호의식 교육·홍보사업, DC이용보호체계 정립, 출장비 및 기자재비등 운영비 성격이 강한 예산을 절감하여 저작권 침해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집중부각 됨에 따라 저작권 보호 및 침해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활용하게 됨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6	문화콘텐츠 산업기술 지원(R&D) (일반회계) (10,370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료 수납실적 저조 (기한도래액 대비 회수액 비중인 징수율이 평균 7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상황 악화로 기술료 회수율이 낮아지는 것도 일부 원인이 되고 있음 - 현재 기술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기술료 납부 안내서 송부 등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음 - 기술료 미납이 지속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채권 추심 등을 통해 기술료 징수를 완료할 계획임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7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개발사업 (R&D) (일반회계) (1,000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예산액 10억원 대비 10.4%인 1억 4000만원 실집행	- R&D 사업은 사전준비 단계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보조금 교부이후 전문기관에서 사업기간 이월이 불가피함 - 2009년부터 기술수요조사, 과제기획위원회 운영 등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시점(전년도)에 미리 실시하여 사업연도 시작과 동시에 사업을 조기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집행 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음	【동의】 -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보다 면밀한 계획 마련 필요
8	관객지향형 공연예술 기술개발 지원(R&D) (일반회계) (1,000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예산액 10억원 대비 56.0%인 5억 6000만원 실집행	- 2009년부터 기술수요조사, 과제기획위원회 운영 등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시점(전년도)에 미리 실시하여 사업연도 시작과 동시에 사업을 조기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집행 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음	【동의】 -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보다 면밀한 계획 마련 필요
9	지능형문화 공간인프라 기술개발 (R&D) (일반회계) (1,000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예산액 10억원 대비 8.8%인 8,800만원 실집행	- 2009년부터 기술수요조사, 과제기획위원회 운영 등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시점(전년도)에 미리 실시하여 사업연도 시작과 동시에 사업을 조기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집행 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음	【동의】 -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보다 면밀한 계획 마련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0	모태펀드 사업추진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구)문화산업진흥기금 여유자금의 조속한 모태펀드 출자 필요	- 그간 모태펀드에 출자된 금액도 경제상황과 시장의 수요부족 등으로 인해 출자된 자금이 바로 결성되거나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이에 시장상황을 고려한 모태펀드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안에 모태펀드에 단계적으로 출자할 계획임	【동의】
11	신문유통 원지원 (일반회계) (23,020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메이저신문사들의 소극적 참여로 공동배달사업 효과가 저조함	- 신문공동배달사업은 신문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만큼 참여를 강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배달낙후지역 공배인프라 확충을 통해 메이저신문사의 공배참여 유인력을 제고하고 있음 - 실제로 메이저신문사는 배달망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도권지역의 공배참여는 소극적이나, 신문지국 운영이 힘든 지방소도시, 읍면단위 배달낙후지역에 개설되는 소형공배센터에는 메이저신문지국의 공배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2010년까지 배달낙후지역에 대한 소형센터 개설을 확대하여 메이저신문사 의 공배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음	【동의】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2	신문유통 원지원 (일반회계) (23,020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영센터 순손실 지속발생 - 직영센터 수익률 제고방안 마련 - 직영센터와 민영센터간의 사업협력 강화를 통한 공배사업 효율성 제고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영센터는 전국적 공동배달망을 관리하고, 관할지역내 민영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현재 간행물·홍보물 배달사업, 소외계층구독료지원 사업 대행 등을 통해 매출 및 수익을 제고하고 있으며, 운영규모 축소 등을 통해 경비절감을 실현, 직영센터 수지를 개선해나가고 있음 -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운영수지를 개선해나가고 민영센터와의 제휴비지니스를 강화해 공배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음 	<p>【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보다 철저한 계획과 홍보 등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3	신문유통 원지원 (일반회계) (23,020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년 개설한 소형센터 60개소 중 59개소에 메이저신문사 참여 - 메이저신문사 3개 모두 참여한 곳은 20개소, 참여제고노력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위기와 신문사 경영악화로 낙후지역에 대한 신문지국 폐쇄가 늘어남에 따라 신문지국 운영이 힘든 지방소도시, 읍면단위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메이저신문사의 공배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음 - 또한 변화된 사업환경을 고려하여 소형센터 개설전략을 보완 수립하고, 간행물 배송사업 물량확대를 통해 공배참여 신문사와 해당지국의 수입을 늘리도록 함으로써 공배참여 유인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p>【동의】</p>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4	방송영상 콘텐츠 국제공동 제작 사업 (일반회계) (1,0800 백만원)	문 제 점	- 방송콘텐츠국제공동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의 실제 수행기간과 회계연도가 불일치하여 실집행실적이 저조	- 동 사업 추진 중 '07년도 선정 국가의 추가 제작 및 '08년도 신규 제작을 위해 20억원 전용 - '08년 7월 쌍방향성 공동제작 및 방영을 통해 한류의 지속 확산, 반 한류지역의 문화이해도 제고와 국가이미지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브라질,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신규국가와 07년 선정국가 추가제작에 부족한 재원 전용	【동의】 -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시정의견	-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진용 등을 통한 신규사업추진으로 인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및 확정권에 제약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15	2010월드 레저대회 경기장 조성 (일반회계) (4,000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연례적 실집행실적 부진	-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방비 예산 추가 확보, 설계 및 공사 착공 등 행정절차 이행(입찰방식 심의, 발주 의뢰 계약 등)에 필요한 시기 소요 등으로 인해 단년도 모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실정 - 향후 지자체 행정절차 이행 우선 검토 등 지자체 실집행이 활성화 되도록 지도감독 강화	【동의】 -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봄
16	전국체전 시설 지원 (일반회계) (26,500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실집행실적 부진	-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방비 예산 추가 확보, 설계 및 공사 착공 등 행정절차 이행(입찰방식 심의, 발주 의뢰 계약 등)에 필요한 시기 소요 등으로 인해 단년도 모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실정임 - 향후 지자체 행정절차 이행 우선 검토 등 지자체 실집행이 활성화 되도록 지도감독 강화	【동의】 -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이행 중이나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7	국가주요 시책홍보 사업 (일반회계) (3,632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국가주요시책홍보'사업의 2008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시 정부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부의 시책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사유로 36억원이 감액되었음 - 동 사업은 전용을 통하여 9억 8,300만원, 조정을 통하여 1억 9,100만원, 예비비를 통하여 7억원 등 18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국회의 예산확정권을 침해한 것임	- 국가주요시책 홍보는 정확한 홍보수요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2008년도에는 돌발적인 세계경제위기 발생에 따른 홍보 추가수요가 발생하여 「경제살리기」홍보 등에 부족한 예산을 전용 사용하게 되었음	【동의】 -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강구 필요
18	교육기자재 구입 및 관리 (일반회계) (3,729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전용, 조정, 이용등으로 677백만원이 영상원 믹싱스튜디오 및 대시사실 구성등의 공사비로 사용	-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철저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	【동의】 -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이행 중이나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
19	U-AT통섭 사업 (일반회계) (4,000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09.1.1 미래교육준비단의 폐지로 사업 종료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급박하게 물품의 외자계약(조달청구매)을 체결하여 연구장비를 당초 사업 목적에 이용 하지 않음	-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시 사업추진 및 일정을 고려하여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동 구매장비는 협동과정에서 포항공대 등 타대학과의 교류교과 원격강의에 활용	【동의】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20	국립중앙 박물관 운영 (일반회계) (20,044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국립중앙박물관 운영사업의 연례적 전용 및 조정 감액 문제	- 각 지방 국립박물관 무료관람 및 진주박물관 전시실 개편공사 지원 등으로 전용 감액 발생. - 국립박물관 무료관람 관련 전용은 '08.5월부터 시범운영된 박물관 무료관람을 위하여 고객 서비스 인프라 및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집행된 절감액 활용사업이며, 진주박물관 전시실 개편 사업의 경우 '07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08년도 예산 미확보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국립중앙박물관운영 사업의 예산을 절감하여 전용 지원하였음 - 향후에는 체계적 예산수립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운영 하겠음	【동의】
21	국립나주 박물관 건립 (일반회계) (2,396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집행부진	- 문화재발굴조사를 위한 부지매입을 조속히 완료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마무리하여 공사가 조기에 착수되도록 추진	【동의】 -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이행 중이나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22	부여박물관 복합 문화센터 건립 (일반회계) (3,833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집행부진	- 건립부지 선정 지연에 따른 전체적 사업지연 및 정부 예산 절감 검토 대상으로 지정되어 2008년 착공하지 못하고 부득이 불용처분 됨 - 향후 철저한 공정관리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음	【동의】 -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이행 중이나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23	한글사랑 운동 전개사업 (일반회계) (800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절감액을 전용하여 활용한 사업으로 절감예산의 사용목적과 괴리가 있고, 전용을 통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 - 한글에 대한 사랑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세부내역이 지나치게 행사성 경비로 추진됨 - ‘한글날 큰잔치 행사’(600백만원)는 사업내용이 지나치게 행사 위주의 경비로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도 초반, 영어 조기 교육, 영어 공교육 등 외국어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로 일반 국민의 우리말과 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낮고, 인터넷, 방송 등에서의 국어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관심과 국어의 올바른 사용을 이끌어 낼 필요성이 절실하였음. - 사업 성격상 주로 행사성 경비로 추진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처음으로 지정·선포하는 “한글 주간”에 전 국민의 폭 넓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p>【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노력 필요
24	건국60주년 기념 국어사랑큰 잔치사업 (일반회계) (200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은 예비비로 집행한 행사성 경비 사업으로 예비비로 집행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이러한 예비비 지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수립 60주년이라는 뜻깊은 한해를 맞아 처음으로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우리말을 지키며, 국어발전을 위해 애쓰는 국어 관련 종사자들의 노력을 기리며 감사하고, 아울러 한국어의 진흥과 세계화를 다짐하고 방향을 재설정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임. - 이러한 사업의 성격상 행사성 경비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음. 	<p>【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봄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25	건물대여료 과소 수납 (일반회계)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구내식당, 매점의 건물 임대료 요율을 1,000분의 25(행정보존목적 수행) 적용하여 건물대여료 과소 수납	- 구내식당, 매점의 이용자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행정목적으로 판단 - 임대료 상승시 식단가가 높아지거나 음식의 질이 떨어져 이용자 민원 발생이 우려됨	【수용불가】 - 이용자가 일반 국민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행정목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타 기관에서는 이를 일반목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도 타당하지 않음
26	건물대여료 (일반회계)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현재 구내식당 및 (사)현대미술관회에 대해 행정목적에 해당하는 2.5%의 낮은 임대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공무원 후생목적인 4%나 기타 경우인 5% 이상의 요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 구내식당의 경우 식수 부족 등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2.5%의 요율을 적용하였으나 향후 4%의 요율을 적용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위탁업체 선정 예정 - (사)현대미술관회의 경우 현대미술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일반인 대상 미술 교육을 수행하고 있어 행정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2.5%의 요율을 적용함	【동의】
27	생활체육 공원 조성 (균특회계) (13,534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실집행실적 부진	-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방비 예산 추가 확보, 설계 및 공사 착공 등 행정절차 이행(입찰방식 심의, 발주 의뢰 계약 등)에 필요한 시기 소요 등으로 인해 단년도 모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실정임. - 향후 지자체 행정절차 이행 우선 검토 등 지자체 실집행이 활성화 되도록 지도감독 강화	【동의】 -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이행 중이나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28	노인건강 생활 체육시설 조성 (균특회계) (2,910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실집행실적 부진	-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방비 예산 추가 확보, 설계 및 공사 착공 등 행정절차 이행(입찰방식 심의, 발주 의뢰 계약 등)에 필요한 시기 소요 등으로 인해 단년도 모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실정임. - 향후 지자체 행정절차 이행 우선 검토 등 지자체 실집행이 활성화 되도록 지도감독 강화	【동의】 -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이행 중이나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29	문화중심 도시조성 기반사업 (이특회계) (200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연구용역 공고만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한 바 없이 차년도로 예산을 이월한 것은 「국가재정법」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정한 이월	- 동 연구용역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추진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입찰공고 후 이월 가능(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3호)	【수용불가】 - 국가재정법의 해석에 비추어 모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아닌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계약 중 협상에 의한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적정
30	문화콘텐츠 기술연구 기반조성 연구 (이특회계) (400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연구용역 공고만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한 바 없이 차년도로 예산을 이월한 것은 「국가재정법」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정한 이월	- 동 연구용역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추진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입찰공고 후 이월 가능(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3호)	【수용불가】 - 국가재정법의 해석에 비추어 모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아닌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계약 중 협상에 의한 경비를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 연구용역은 장기간에 소요되는 경비로 보기에 곤란하므로, 조치미흡
31	문화역사 마을 조성사업 (관광기금) (3,000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사업비의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며, 사업 추진상의 특징을 고려함이 없이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실집행 부진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	- 사업의 특성상 3~4년이 소요되는 중기사업으로서 2009년 말에 종료됨 - 대부분의 중기사업과 같이 동 사업은 사업초기에 자금이 많이 투자되지 않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설계 등을 수행하여 실집행이 저조함 - 사업의 후반기에 실집행이 많이 되는 공사착공이 이루어져 현재 총사업비 154.5억의 93.5%를 집행하였으며 사업완료 시점까지 예산 전액 집행가능	【동의】
32	폐광지역 문화 자연체험형 상품 (관광기금) (3,000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사업의 실제 추진과정이나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 지원함에 따라 실집행 부진	- 영월마차 탄광문화촌 사업(21억원)은 '09.7.2 준공검사가 완료됨에 따라 7월중순 전액 집행 예정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감됨 - 정선 예술인촌 사업(9억원)의 경우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 다소 사업추진이 미흡하나, 사업계획변경 완료('09.5~8월)후 본격적인 사업 착수 예정으로 예산집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동의】 -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며, 보다 면밀한 집행을 제고 대책 마련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사업 추진상황에 맞게 예산 지원함으로써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하겠음 - 또한, 주기적인 사업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독려함으로써 실질행 부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33	가고싶은섬 (관광기금) (7,725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실시된 사업이 2009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집행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은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함. - 특히, 2008년 2월에 동 사업의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것을 감안할 때, 지자체별 마스터플랜조 차 수립되지 않은 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2개년에 걸쳐 예산을 편성·지원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한 사례 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예 산집행에 있어서도 원활한 사업추 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부에서는 '06.11월, 기본 계획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07부터 예산에 반영, 추진하였음 - 그러나, 각 자치단체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토론회 등을 거쳐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 시행 함에 따라, 마스터플랜 수립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순차적 으로 각 섬별 실시설계 지연 및 지자체의 실예산집행 실적 이 부진하게 된 것임. - 외연도 및 홍도는 '08.12월 설 계 완료하여 현재 공사추진 중 이며, 매물도와 청산도는 공원 계획변경으로 실시설계가 지연 되었으나, '09. 7월까지 모두 완료예정이며, 향후 정상추진이 예상됨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 지 않도록 연차별 투자계획 수 립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음 	<p>【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며, 보다 면밀한 집행률 제고 대책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34	관광특구 활성화 (관광기금) (5,000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계획수립 미흡으로 사업집행 부진	-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지방비 확보,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고, 지자체 사업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해 상황점검 및 지속적인 집행 독려를 실시할 계획임	【동의】 -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며, 보다 면밀한 집행률 제고 대책 필요
35	도시관광 활성화 (관광기금) (4,000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계획수립 미흡으로 사업집행 부진	-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지방비 확보,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고, 지자체 사업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해 상황점검 및 지속적인 집행 독려를 실시할 계획임	【동의】 -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며, 사전계획의 면밀한 수립 등 집행률 제고 대책 필요
36	1.5차산업 활성화 시범사업 (관광기금) (4,000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사업기간이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있으므로 2008년 결산심사에서는 집행액 및 그 내역에 대한 정확한 평가 어려움 - 향후 단년도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회계년도와 일치하도록 추진함으로써 국회에서 결산심사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사업에 따라 계획 결정이 연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향후 단년도 사업은 최대한 예산 회기년도와 맞추어 사업의 평가와 결산의 심사가 적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동의】 -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며, 보다 면밀한 집행률 제고 대책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37	구서울역사 관광자원화 사업 (관광기금) (296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미비로 인한 예산집행 부진 및 사업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5년 건립된 문화재시설인 구 서울역사는 당초 간이 구조진단에서 구조상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08년도 4/4분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는 계획으로 '08년 예산을 편성 - 실시설계과정에서 당초 예측보다 문화재 실측이 어렵고 시설의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추가 정밀안전 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설계기간을 연장(2008.11.25 → 2009.2.13, 100일 → 180일로 연장), 설계비(710백만원)는 이월하고 시설비·감리비(3,994백만원)를 불용되는 예산집행 부진의 결과가 초래됨 - 향후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으로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음 	<p>【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며, 보다 면밀한 집행률 제고 대책 필요
38	템플스테이 운영 및 국제선센터 건립 (관광기금) (15,000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직원의 급여 및 복리수행비 지출 관련 - 08년 경상비 예산인 30억원 중 31,7%인 9억5천만원만 개별사찰에 지원된다고 지적한 점 - 민법상 법인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템플스테이는 100여개 사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괄 관리하는 주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기능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수행하고 있으며. 이 단체가 없다면 해당업무는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데 인력규모 및 업무특성상 사실상 부적정하고 불가능함 - 템플스테이 사업비에서 급여 등을 지급받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직원은 전원 계약직으로서 	<p>【수용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템플스테이를 수행 중인 개별 사찰로 지원되는 금액이 과소하여 사업 성과가 미흡함에도 동 사업비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p>템플스테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임 따라서 예산항목이 관리운영비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업비로 분류되어야 하며 사업수행에 있어서 개별 사업별로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 전체 사업비는 약 30% 증가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히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직원들에 지출되는 인건비는 사업 성과와 동 직원들의 경력·전문성 등으로 고려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개별 사업별로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 2008년 사업비 기준으로 6억 이상 증액해야 하며 사업 영속성과 전문인력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경상비 30억 중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직원의 급여·복리후생비 470백만원 이외의 예산은 홍보비나 사이트 운영, 유니폼 지원 등 개별사찰의 템플스테이 사업을 위한 지출이므로 개별사찰에 지원되는 예산은 경상비의31.7%가 아니라84%임 - 템플스테이 참가자가 전년대비 30%(외국인 증가율 40%) 증가율을 보이는 사업으로 전통문화의 관광상품화 및 문화국가로서의 국가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p>지원이 과다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을 수행 중인 직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나, 동 경비가 사업성 경비만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불교문화사업단 직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건비라는 점에서 부적정 - 경상비 중 홍보비나 사이트 운영비 등이 개별 사찰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타 사업은 이를 사업관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39	지역관광 혁신모델 구축사업 (관광기금) (1,000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지역관광혁신모델 구축 사업의 사업계획 미비에 따른 미집행	- 향후 사업추진 시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행착오를 줄이수 있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하겠음	【동의】 -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봄
40	한국관광 공사인건비 및 운영비 (관광기금) (16,509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의 법적근거 미흡	- 동사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및 한국관광공사법 제14조(보조금)에 근거하여 정부정책과 연계한 공사의 목적사업인 외래관광객유치 및 관광환경·서비스 개선 등 국민관광진흥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경비로 공사를 통한 정부 정책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서는 공사운영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함 - 다만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는 만큼 향후 별도의 법적근거 마련 방안을 검토하겠음	【동의】
41	관광사업체 용가지원 (관광기금) (213,159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관광사업체 용가지원사업의 연례적 계획변경 문제	- 용자대상 사업자 선정 시 전년도 집행 실적과 동향을 고려, 확정예산 내에서 지원 방안 강구 - 예산변경의 최소화	【동의】
42	여유자금 과다	문 제 점 및	- 여유자금 운용액이 기금운용액 대비 65.5%로 사업성기금 성격에	- 공자기금에 '09년 2,000억원, '10년 2,000억원 예탁 예정, 2011 대구육상·2014	【동의】 -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운용 (체육기금) (372,425 백만원)	시정의견	<p>비추어 과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유자금 적정 수준 보유 및 적극적인 사업발굴로 여유자금 운용규모 조정 필요 - '08년말 여유자금 운용수익율 2.5%로 수익률 감소 	<p>인천아시아·2015광주유니버시아드 등 대규모 국제대회사업에 기금재원 투입, 일반회계 사업 중 일부 기금 전환 및 신규사업 발굴 등 향후 여유자금 운용규모를 적정하게 운영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운용수익률은 회계년도 말 평가상 손실액으로 실제 손실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2009년 주가지수 회복으로 자금운용수익률은 개선되고 있음 	<p>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며, 수익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p>
43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경정 특별적립금의 사업 부적정	문제점 및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세출 외로 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일반회계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 집행, 행사성 경비 과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그 사용용도를 부령에 명시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09.3.18) 및 경륜경정법 개정(2009.4.1), 후속조치로 수익금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절차 이행 중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여 적립금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을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상임위에 제출할 계획임(2009년 사용계획은 기 제출) - 수익금의 배분비율 하향 조정(관계법령 개정 추진), 적립금 지원대상사업과 유사·중복성 일부 재정사업에 대해 적립금사업으로 이관(기재부 협의, 2010년 반영계획)하여 효율성 제고 	<p>【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봄 - 다만, 세입세출외로 운용하는 것에 대하여 운용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존재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됨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44	경정훈련원 건립 (체육기금) (4,406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경정훈련원 건립사업의 연례적인 예산집행부진	- 2009년까지 사업시행자지정,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예산 집행 부진하였음 - 2008년 9월 공사계약 체결되었고, 현재 공정률(계획 14%/실행 14%)도 적정함에 따라 추후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될 것으로 판단됨	【동의】 -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철저한 점검 필요
45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체육기금) (10,048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생활체육인프라조성사업의 예산집행실적 부진	- 광산·정선골프장에서 광주광역시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지연(광산), 강원도의 도시계획 심의 지연(정선)으로 인한 실시계획인가 미승인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영광·제천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기간이 차기년도까지 지속되어 사고 이월됨. - 향후, 해당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행정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음.	【동의】 -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며, 보다 면밀한 집행률 제고 대책 필요
46	농어촌복합 체육시설 건립 (체육기금) (3,750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지자체의 사업집행을 위한 노력미흡으로 매년 60%이상의 예산이월이 발생하는 등 사업규모에 비해 실집행실적이 저조함	-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방비 예산 추가 확보, 설계 및 공사 착공 등 행정절차 이행(입찰방식 심의, 발주 의뢰 계약 등)에 필요한 시기 소요 등으로 인해 단년도 모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실정으로 대부분은 익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음 - 향후 지자체 행정절차 이행 검토, 사업 조기선정 등 지자체 실집행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	【동의】 -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며, 보다 면밀한 집행률 제고 대책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47	국민체육 센터 건립 (체육기금) (46,000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08년의 경우 부산, 충북, 충남, 제주등 일부지자체의 실집행실적이 전혀없거나 미미하며 타지자체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저조함	-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방비 예산 추가 확보, 설계 및 공사 착공 등 행정절차 이행(입찰방식 심의, 발주 의뢰 계약 등)에 필요한 시기 소요 등으로 인해 단년도 모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실정으로 대부분은 익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음 - 향후 지자체 행정절차 이행 우선 검토 등 지자체 실집행이 활성화 되도록 지도감독 강화	【동의】 -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며, 보다 면밀한 집행률 제고 대책 필요
48	운동장생활 체육 시설 (체육기금) (32,941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실집행실적 부진	-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방비 예산 추가 확보, 설계 및 공사 착공 등 행정절차 이행(입찰방식 심의, 발주 의뢰 계약 등)에 필요한 시기 소요 등으로 인해 단년도 모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실정으로 대부분은 익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음 - 향후 지자체 행정절차 이행 우선 검토, 조기 선정 등 지자체 실집행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	【동의】 -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며, 보다 면밀한 집행률 제고 대책 필요
49	남북체육 교류 (체육기금) (1,000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국고교부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	- 금강산관광객피살, 개성공단 문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남북관계 경색으로 체육교류 또한 부진하였음 - 향후 남북관계가 호전될 것에 대비하여 다각적으로 체육교류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동의】 -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며, 보다 면밀한 집행률 제고 대책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50	육상진흥 센터 지원 (체육기금) (3,000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국고교부실적이 부진	- 당초 지방체육시설(대구시)로 추진하였으나, 국회 2009년도 예산심의 시 국립시설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주체 결정시까지 사업이 중단되어 일부 미집행 됨 - 현재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기획재정부 검토 중으로 이후 정상적 추진 예정	【동의】 -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며, 보다 면밀한 집행률 제고 대책 필요
51	문화예술진 흥기금 재원확보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전입금 확보 노력 필요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확보는 일반회계 지원 타 사업과의 중복성 해소조치 필요 · 복권기금 전입비율 정률화는 복권기금 지원 타사업과의 형평성 감안 필요 · 경륜경정 수익금 중 청소년육성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기금에 지원하는 수익금 일부의 전입방안 고려 - 기금운용 효율화 필요 · 인력운영 효율화를 통한 사업비 절감 노력 필요 - 법정부담금 미수납액 발생최소화 노력 · 문예위원회 적극적 수납노력 필요	- 전입금 확보노력 추진 중 · 복권기금 전입비율 정률화는 기금사업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지속적으로 확보 노력 예정 · 경륜경정 수익금의 문예기금으로의 전입을 위해 현재 경륜경정법시행령 개정을 추진중 - 기금운용 효율화 추진 ·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년 2월에 조직을 축소하고(22개→18개 부서) 정원 15명 감축(126→111명), 대졸초임 연봉 인하(3,254→2,627만원)하였음 - 법정부담금 미수납액 회수 노력 · 독촉장 발부, 출장 등을 통한 적극적 납부 유도 지속 · 고액채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권유 등을 통해 적극 회수	【동의】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52	지역문화 예술지원 (문예기금) (9,800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에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어 지역간 격차해소와 지역 문화역량 제고라는 사업목적과 괴리 - 열악한 지자체에 지원비율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문화예술 편중현상 시정을 위해 지자체 재원현황, 인구수, 사업추진역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배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 - 지역문화예술지원을 위한 지원금 균형 배분(안) 마련 중으로 2010년도 지원방안을 금년 하반기에 확정하여 지자체에 공지 예정 	【동의】
53	통화금융 기관예치 (지역신문 발전기금) (17,515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유자금 과다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악한 지역신문사의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융자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및 일부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여 여유자금 규모가 증가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융자사업 등 전반적인 사업 집행이 원활하여 2009년도 융자사업의 경우 100% 집행이 예상되며, 특히 2009년부터는 정부 출연금 대폭 축소에 따른 재원 감소 등으로 여유자금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 될 것임 - 향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기간 연장 등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국회 논의 결과 등 추이와 열악한 지역신문 특성 등을 감안 효율적인 기금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임 	【동의】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54	여유자금 운용 (신문발전 기금) (8,849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여유자금 과다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신문산업 여건에 따른 용자취급은행 선정 지연('06년) 및 우선지원대상사의 담보능력 부족에 따라 용자집행 실적 저조 등으로 여유자금이 발생하였으나, 2009년도 부터는 예산 대비 용자금 초과 신청 등 100% 용자 집행이 예상되며, 정부출연금 대폭 축소에 따른 재원 감소 등으로 여유자금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 될 것임 - 향후 개별사 지원보다는 신문 산업 전체 인프라 구축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하여 효율적인 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동의】
55	유통지원 (영화기금) (10,000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복합상영관 건립사업이 서울시 예산반영 소요기간 및 참여 불확실성으로 부지매입비로 반영된 2008년 예산(98억원) 전액 불용처리되는 등 유통지원 사업의 사전계획 수립 미비로 인한 집행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 추진 시 지자체와 상당기간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변수로 인해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려웠음 - 향후 동종의 사업을 추진할 시, 보다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조사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하기관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동의】 -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며, 집행을 제고를 위한 철저한 점검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56	투자자본 안정화 (영화기금) (20,000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투자자본안정화 사업과 문화산업기금 모태펀드 출자의 중복지원	- 세계 경기 불황 및 고위험성으로 모태펀드 투자액 결성이 어려운 현실 고려 필요 - 고위험, 저수익 구조이자 최근 침체국면인 영화산업 투자위축 심화 등을 감안, 모태펀드와 투자출자 사업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개선(안) 마련 검토	【동의】
57	유통구조 선진화 (영화기금) (397백만원)	문 제 점	- 통합전산망 가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가입극장과 미가입극장과의 형평성 문제 존재	- 향후 통합전산망 가입 의무화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통전망 의무가입 법제화 영비법 일부개정(안) 발의(진성호 의원)	【동의】
	시정의견	- 통합전산망 미 가입기관에 대한 가입방안 마련필요			

18. 문화재청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	문화재보 수정비 (일반회계) (18백만원)	문 제 점	- 총액계상사업인 동 사업의 연례적인 이월 및 실집행부진	- 이월방지 및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2010년 예산사업부터 반영하고, 2009년 예산집행을 독려 - 정부예산안 사전통지안 조기 실시 - 2010년 예산신청 지침에 반영 - 단계별 사업추진 - 계속비사업의 연차사업으로의 단계별 추진	【동의】 - 다만, 연례적이고 지속적인 집행부진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의 집행이 필요
		시정의견	- 연례적인 이월과 실집행실적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 강구 필요		
2	고건축물 보수정비 (일반회계) (6,853 백만원)	문 제 점 및 시정의견	- 예산 목적과 배치되는 집행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2010년부터 조선왕릉관리사무소 건립 관련 예산의 별도 편성 추진 중, 경상관리 성격 예산은 궁능원시설관리사업으로 단일화하여 추진	【동의】

19. 방송통신위원회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	한국교육 방송공사 출자 (일반회계) (1,237 백만원)	문 제 점	- 2008년까지 EBS의 HD방송비율이 45%에 불과함에도 2009년 6월말까지 2008년 집행 잔액 49억 6,2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는 등 집행이 부진	- 재정당국에서 KBS가 신청한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제18대 국회 개원 시 인상안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여 수신료 인상과 관련이 있는 EBS 자본금 출자예산 배정을 유보하다 10월에 배정하여 디지털 전환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당초 목적대로 '09년도에 전액 집행예정이며,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동의】 - 2009년 7월 EBS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전환계획의 적극적 추진 의사가 보임
		시정의견	- EBS가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		
2	기업정보 보호대응 능력강화 (일반회계) (2,430 백만원)	문 제 점	- 웹호스팅업체 보안성강화사업의 지원대상을 웹호스팅업체에서 일반웹서비스인 IT서비스업체까지 확대하는 것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웹호스팅업체의 보안성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정보통신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추가 확대대상이 된 영세기업의 경우 대부분 정보보호가 취약하여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확대 지원이 필요하였음	【동의】 - 사업의 궁극적 목적인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음
		시정의견	-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편성 당시 계획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사업의 취지, 정책적 필요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3	장애인 방송제작 지원 (방송발전 기금) (3,000 백만원)	문 제 점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 외의 방송사업자도 법적으로 장애인방송을 제작·편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지상파방송사업자 외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현황조사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일부방송사업자에 대하여만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 향후 지역민방,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플랫폼사업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동의】 - 지적 취지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다만 향후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시정의견	- 케이블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방송사업자 등의 장애인방송 편성현황, 재정지원의 효율성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대상, 프로그램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4	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 (2,000 백만원)	문 제 점	- 지속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	- 객관적 수요조사 및 동향파악, 실적점검 등을 통하여 적정 예산 규모를 편성하겠음 - 콘텐츠 유통에서 발생한 수익이 재투자되는 시장의 선순환구조 조성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음	【동의】
시정의견	- 사업에 대한 수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콘텐츠 제작사의 수익배분 등 유통 관련 제도적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 농림수산식품부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사업 (농특회계) (28,034 백만원)	<p>문제점 - 35세 미만(영농경력 5년 미만) 은 창업농으로, 45세 미만(영농 경력 10년미만)은 신규후계농으로 2원화되어 45세 미만의 영농경력 10년 이상인 자는 선정 불가능</p> <p>시정의견 - 연령, 경력조건을 하향 조정하고 창업농·신규후계농 사업 통폐합 필요</p>	<p>- 사후관리 효율성, 신청자 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을 통합하여 45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운영</p> <p>- 또한 농업경력 제한 요건을 폐지하여 영농 초기 진입자에 대한 불이익 해소</p>	<p>【조치완료】</p> <p>- 09년말부터 창업농·신규후계농 사업이 통합되어 영농초기 진입자 불이익이 해소되는 등 바람직하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p>
2		<p>문제점 - '08년 감사원 조사결과, 219명이 농업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p> <p>시정의견 - 후계농 영농종사 여부, 규모, 경영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 사후관리 계획 필요</p>	<p>- 농업외 직업 종사여부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카드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고, 농업외 직업 종사자는 선정 제외</p> <p>- 선정 후 타직업과 겸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창업농으로 선발되더라도 영농규모가 작아 초기에 소득을 올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운영중</p>	<p>【동의】</p> <p>- 후계농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p>
3		<p>문제점 - 농업인턴사업 종료 후, 인턴대상자를 창업농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사후 관리 미흡</p> <p>시정의견 - 후계농업인 육성사업과 농업인턴 등 추가사업과의 연계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 필요</p>	<p>- 시군에서 인턴대상자를 지속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군의 관심부족, 행정력 부족 등으로 면밀한 관리에 어려움</p> <p>- 인턴 사후관리를 포함하여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및 추가 사업과의 연계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후계농 육성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음</p>	<p>【동의】</p> <p>- 향후 사업간 연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p>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4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농특회계) (18,000 백만원)	문 제 점	- 용자위탁기관으로의 집행률은 100%였으나, 실제용자대상자에 대한 실집행률은 55%에 불과	- 향후 주택건축시기, 사업자 선정시기 단축 등을 추진하고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방식을 재정지원방식에서 이차보전방식으로 변경하여 집행률과 실집행률 차이발생을 해소할 계획	【동의】 - 지원방식 변경을 통해 집행률 부진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국회에서는 지속적인 사업집행실적 관리가 필요
	시정의견	-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5	농촌지역 개발사업 (균특회계) (497,602 백만원)	문 제 점	- '08 농촌지역개발사업 예산 4,976억원 중 지출액은 4,257억원이며 실 지출액은 4,112억원임(실집행률 82.6%)	-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고 행정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하며, -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업추진이 저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산검토시 불이익을 주는 등 사업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나가겠음	【동의】 - 사업대상자 조기선정 및 행정소요기간 단축, 모니터링 강화 및 환류장치 강화 등을 통해 집행률 부진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
	시정의견	- 실집행률 제고 필요			
6	농촌활력 증진사업 (균특회계) (347,400 백만원)	문 제 점	- 인센티브 위주의 사업추진체계 등으로 인해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지자체 속출	- 사업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S/W 중심인 사업특성상 사업추진역량강화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를 유도하고자 인센티브에 중점을 둔 것임 - 개편된 광특회계 사업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예산 삭감 등 패널티 환류장치를 마련할 예정임	【동의】 - 모니터링 강화, 환류장치 강화 등을 통해 집행률 부진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국회는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시정의견	- 우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중심 사업평가체계를 개선하여 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삭감 등 패널티 환류장치에 초점을 둘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 산정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7	농촌활력 증진사업 (광특회계) (347,400 백만원)	문 제 점	- 농촌활력증진사업이 분리되어 소관부처도 나뉘게 되어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 제고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음	-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내에서도 그 동안의 농촌활력증진사업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 최대한 노력하겠음	【동의】 - 향후 농식품부의 조치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사업명칭이 변경되는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과 '기초생활권개발'사업간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시정의견	- 농촌활력증진사업의 성과를 계승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8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광특회계) (5,624 백만원)	문 제 점	- 사전환경성검토 등과 같은 행정협의를 끝나기 전에 예산이 신청·배정되어 집행실적 부진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10년부터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예산신청전에 기본조사 및 사전환경성검토 등과 같은 행정협의를 거치도록 '예산신청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임	【동의】 -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집행실적 부진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국회는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시정의견	- 기본계획 수립시 사전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지표조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업만 예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실현성과 신속성 제고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9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 (균특회계) (8,930 백만원)	문 제 점	- 체험마을 당 평균방문객수와 관광매출액이 정체상태임	- 마을 사무장 제도는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 또한 체험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해 마을사무장제도와 병행하여 보험지원 확대, 1인 1촌 전문가 지원, 인적역량 교육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휴가 캠페인, 마을가꾸기 경진대회, 홍보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중임	【동의】 - 상기 조치를 통해 집행률 부진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
	시정의견	- 녹색농촌마을 질적 내실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 마련 필요			
10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균특회계) (22,850 백만원)	문 제 점	- 지역농업클러스터 실집행률 저조(교부 24,222백만원, 실집행 17,999백만원)	-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는 100% 집행하였으나, 지자체에서 미집행 발생(지자체 이월) - 사업단 평가('09.12)시 실집행 실적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한편, 독려 출장('09. 6, 9월) 등 집행실적 제고 노력 경주	【동의】 - 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집행률 부진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시정의견	- 집행률 제고 필요			
11	농산물 유통개선 (균특회계) (16,540 백만원)	문 제 점	- 균특회계 실집행률 부진(79.4%)	- 실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사업대상자의 부지 미확보에 따른 것임 - 사업대상자 선정시 부지확보를 중점 심사하고, 사업대상자의 여건에 따라 사업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조정하여 실집행률을 높일 계획	【동의】 - 평가기준 강화 등을 통해 집행률 부진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시정의견	- 집행률 제고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2	원예 브랜드육성 (농안기금) (9,120 백만원)	문 제 점	- 보조사업 중 연례적 실행실적 부진(평균 집행률 3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규모 축소 및 산지유통활성화사업으로 통합지원 등 제도 개선 - '09 신규 사업체는 지원규모 축소(105억원에서 70억원), '10년 신규사업체부터 용자사업은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으로 통합운영하여 전문조직수준으로 지원 - '10년 신규사업체는 신설법인체에 대해서는 신청단계부터 출자 확정, 지역내 해당품목 브랜드 통합마케팅 의결 완료 등 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로 한정하여 선정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조치를 통해 집행률 부진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시정의견	- 집행률 제고 필요			
13	화훼 공판장 경매시설 (농특회계) (400백만원)	문 제 점	- 재정용자사업의 집행부진 문제(집행률 4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인허가 등 법적절차(도시계획시설변경, 교통영향평가)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착공이 늦어졌으며, - 순공사기간이 4개월 소요되는 공사로서 물리적으로 연내 공사완료가 어려워 예산 일부 이월 집행 	【조치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 2월에 완공, 사업종료
	시정의견	-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한 용자사업에 대해서는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검토 필요			
14	축산발전 기금 (축발기금) (985,698 백만원)	문 제 점	- 기금운용계획 변경(10건) 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년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료가격 급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국내 축산업발전대책 후속조치 추진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가 재원 소요 발생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10건)한 것임 - 향후에는 당초 계획 수립시 예상치 못한 시급한 수요 등에 한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등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시정의견	- 기금운용계획 적정성 검토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5	마필육성 사업 (축발기금) (7,636 백만원)	문 제 점	- 용자사업의 집행부진 (집행률 66.2%)	- 앞으로는 민간사업자 지원보다는 공공성이 높고 인허가 용이한 지자체 등을 사업대상자로 우선선정지원하고 - 사업비도 대폭 감액 계상하여 미집행률을 최소화해 나가겠음	【동의】 - 상기 조치를 통해 집행률 부진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임
		시정의견	- 집행률 제고 필요		
16	축산물 도축가공 업체지원 (축발기금) (157,941 백만원)	문 제 점	- 용자사업의 집행부진 (실집행률 58.6%)	-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강화하여, 이불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 시설사업의 경우 지원자금의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2~3년차 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동의】 - 상기 조치를 통해 집행률 부진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임
		시정의견	- 집행률 제고 필요		
17	노량진 수산시장 건립 (농특회계) (3,000 백만원)	문 제 점	- 본 사업의 최근 4년간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은 7.5%로 부진	- 본 사업은 인접비축기지부지 일부 활용-협의 등으로 부득이 사업추진이 순연되었으며, 시장상인 등의 판매장 복층화 반대로 실시설계 착수가 약 4개월 지연 - 수협 2단계 사업부지에서 약 6,612㎡을 도매시장 부지로 추가활용함으로써 경매장과 잔품소매점 1층 배치가 가능하고, 시장상인 등이 동 현대화사업 추진에 적극협조하기로 양해각서 체결 -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착공이 가능하여 사업이 정상추진될 것으로 예상	【동의】 - 상기 조치를 통해 집행률 부진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임
		시정의견	- 연례적 집행실적부진사업은 예산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으므로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비를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 편성하는 것이 필요 - 향후 예산 편성시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8	어촌어항 관광조성 사업 (균특회계) (41,600 백만원)	문 제 점	-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계획 미비, 사업추진체계 미흡 등에 의한 어촌종합개발사업(집행률 49.2~63.5%),어촌체험마을(집행 률37.1~67.7%),어촌관광개발사 업(집행률0~54.9%)의 실집행실적 부진	- 해당 지자체가 사업착수 전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 중에 있으므로 '09년에는 90% 이상 실집행 예상	【동의】 - 상기 조치를 통해 집행률 부진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임
		시정의견	- 집행률 제고 필요		
19		문 제 점	-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 어촌관광개발사업의 실질적 통합 미흡	-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차별화 해 나가겠음	【동의】 -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시정의견	- 향후 사업추진체계 정비에 따른 본사업의 실질적인 통합방안 마련 필요		
20	수산물 생산 이력제 도입사업 (농특회계) (1,300백만원)	문 제 점	- 사전사업계획 미비로 최근 4년간 평균집행률이 59.1%로 부진	- 2009년도 사업부터 연도내 사업을 완료하여 향후 예산이월 등의 집행부진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예정	【동의】 - 상기 조치를 통해 집행률 부진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시정의견	- 집행률 제고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21	생분해성 어구시범 사업 (농특회계) (3,000 백만원)	문 제 점	- 사전사업계획 미비로 최근 4년간 평균집행률이 56.5%로 부진	- 향후 기재부와 협의하여 자부담 일부보조(20% 이내) 등 사업지침 개선을 통해 어업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음	【동의】 - 상기 조치를 통해 집행률 부진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시정의견	- 집행률 제고 필요			
22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사업 (농특회계) (2,200 백만원)	문 제 점	- 주민갈등 등으로 인해 최근 4년간 평균집행률이 57.7%로 부진	- 향후 교부된 보조금이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지속적인 현장지도 감독 강화로 사전에 집행부진을 방지토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동의】 - 상기 조치를 통해 집행률 부진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시정의견	- 집행률 제고 필요			
23	바다목장 조성사업 (농특회계) (12,500 백만원)	문 제 점	- '08년도 정부제출 예산안은 12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집행실적 부진을 이유로 3억원 삭감 -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으로부터 10억원을 전용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였음	-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사업지별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그간 예산투자의 미흡으로 사업기간이 '10년에서 '12년으로 1차례 연장되어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한 정부정책 신뢰 훼손과 민원야기, 기존 시설물 멸실우려 등으로 조속한 사업준공이 필요한 상황으로서, - '국가적 행사인 여수엑스포 테마와 연계하여 여수바다목장 해역에 해중림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를 전용한 것임	【동의】 -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시정의견	- 국회가 삭감한 예산의 증액으로 시정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24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 (농특회계) (133,800 백만원)	문 제 점	- '08년 감척계획은 최근 4년간 감척실적의 척수기준으로 65.8%, 사업비 기준으로 160%에 달하여 과다	- '08년도에 고유가 지속에 따른 어업경영여건 악화로 어업인의 희망에 따라 근해어선 감척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음 - '08년 하반기 유가 급락에 따른 어업인의 사업포기와 추경예산 확정지연 등으로 실집행률 부진	【동의】 -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 편성 필요
	시정의견	- 연내 집행 곤란사업 추경편성의 부적절			
25		문 제 점	- 최근 4년간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은 31.9~69.7%로 부진	- 감척사업 지원금 지급시점을 종전 폐선처리 및 어선등록 말소 시점에서 감척어선을 시도에서 인수한 시점을 개선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였음	【동의】 - 상기 조치를 통해 집행률 부진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임
	시정의견	- 사업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연례적 이월 등 집행부진 해소 필요			
26		문 제 점	- '실적어선원에 대한 실업수당 지원 법적근거가 미흡한 상황 등 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미흡	- 실직 어선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어선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3개월 분의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 검토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실직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근거 마련	【동의】 - 상기 조치를 통해 실업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임
	시정의견	- 공공근로와 같은 단기적인 대책마련 보다는 중장기적인 실업대책 마련을 통해 사업 내실화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27	환경 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농특회계) (6,700 백만원)	문제점	- 연례적 집행율 저조(최근 3년간 집행률이 52.1~78.4%)하고, 배합사료 수요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편성 집행 필요	- '향후 수요예측 및 배합사료 집행률을 높여 어족자원의 남획방지와 해양환경보호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겠음	【동의】 - 상기 조치를 통해 집행률 부진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임
		시정의견	- 양식어업인들의 배합사료 품질 및 효과에 대한 불신으로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품질, 고효율의 배합사료 개발 필요		
28		문제점	- 배합사료의 공급비율은 전체의 4분의 1 이하로 사업성과가 미진	- 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고효율 배합사료 개발 및 실용화 연구를 강화하고 있음 - 향후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저오염 사료원료 개발, 어체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 현장적용시험을 통하여 넙치, 조피볼락 배합사료를 개발하여 사료회사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등 고품질, 고효율 배합사료 개발 및 실용화 연구에 집중 투자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토록 할 계획임	【동의】 - 상기 조치를 통해 사업성과부진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임
		시정의견	- 사업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개발 강화, 실용화 추진, 어민홍보 확대 등 종합적 대책마련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29	노후원양 어선대체 지원사업 (수발기금) (2,400 백만원)	문 제 점	- 연례적집행실적 부진사업으로 2009년에 전년과 동일하거나 증액되어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사업은 참치선망어선 신조와 저선령 중고선 도입을 병행지원하고 있음 - 참치선망어선 신조는 대규모 건조공사로서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집행부진의 주원인임 - 선망신조는 사전사업수요 조사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일정이 단축되어 '09년에는 당해연도 사업비가 전액 집행될 것으로 전망 - 향후에는 사업수요가 많고 집행이 확실한 선망신조 예산을 전액 반영할 계획임 	<p>【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조치를 통해 예산편성 부적정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임
		시정의견	-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예산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므로 사업폐지하거나 사업비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축소편성 필요		

21. 지식경제부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	수출보험 기금 (수출보험 기금) (2,295,178 백만원)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보험기금의 '수출보험지원'항은 당초 예산 대비 142.1%나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미제출 - 금융성기금의 자체 변경한도(30%)를 초과한 것으로 국가재정법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제3호 및 기획재정부의 「200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의무적 지출에 해당 - 또한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제4호에 의한 초과수입과 관련된 지출에도 해당 	<p>【수용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로 볼 수없음 - 초과수입과 관련한 지출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초과수입금액과 초과지출금액이 일치되어야하나 초과지출금액이 과도하여 초과수입에 대응하는 초과지출로 볼 수없음 - 기금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국회에 보고되어야할 사안임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2	수출보험 기금 (수출보험 기금) (2,295,178 백만원)	문 제 점	- 환변동보험과 관련하여 2,21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4,311억원의 당기순손실 기록	- '08년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 - 일정 범위 내에서만 환수금·보험금이 발생하는 범위제한 선물환 상품을 도입하고, 오버 헷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한도 축소·조정 및 보험료 인상 - 보험금 지급 의무지출 규정을 수출보험법에 명시 추진 - 입찰방식 환변동보험은 계약체결한도를 적용하여 운영중	【일부동의】 - 입찰방식 환변동보험에 대한 계약체결한도가 개별 종목이 아닌 중장기 수출거래에 포함되어 총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종목별 한도로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음
		시정의견	- 수출보험기금의 담보력 확보를 위하여 보험금 지급을 의무지출로 규정하고, 환변동보험에 대해서는 종목별 계약체결한도를 설정하도록 「수출보험법」 개정 필요		
3	경제자유 구역 기반 시설 지원 (일반회계) (120,677 백만원)	문 제 점	- 각종 행정절차나 보상협의 및 환경문제 등으로 실집행율이 53.5%에 불과	- '08년 국고 재정집행은 100% 완료되었으나, 자치단체 실집행이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음 - '09년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사지연 등의 사유가 해결되어, '09년 이후 실집행 부진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	【동의】
4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 (균특) (10억원)	문 제 점	-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으로 2008년 실집행률은 30.0%로 저조	- 행정절차, 실시설계 지연 및 문화재 발굴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음 - 사업추진에 장애는 모두 해소되어 사업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	【동의】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5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에특, 전력기금) (1,944억원)	문 제 점	- 에너지원별 투자비중 또는 투자 우선순위가 고려되지 않고 예산조정이 진행됨	- 2008년 7월에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에너지원별 예산 배분에서 사업군별(전략기술, 원천기술, 핵심기술, 실증연구)로 투자배분 - 따라서 '08년 당초 원별 예산 계획 대비 집행액 차이는 원별 과제접수 건수의 차이 및 평가결과에 따라 발생 - 앞으로는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의거한 에너지원별 접근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달성과 에너지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할 예정	【동의】
시정의견	- 신재생에너지 장기 목표와 연계하여 에너지원별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에너지원별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필요				
6	전략기술 개발사업 (일반회계) (441,366 백만원)	문 제 점	- 유사성 및 시급성이 부족함에도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의하여 단위사업간 전용을 일괄적으로 실시 - 국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된 예산에 기술료 180억원을 추가하여 집행하여 집행실적의 측정 및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어려움	- 의견 제시 없음	【답변회피·누락】
시정의견	- 예산사업에 기술료를 추가하여 집행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료 사업은 세출예산과 별도의 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7	부하관리 사업 (전력산업 기반기금) (82,370 백만원)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공사는 유사한 사업을 자체부담으로 추진 중이고, 동사업은 경제성이 높아 한전 자체 재원으로 수행 가능 -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 사정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재정사업에서 한전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한전이 여러 전력회사로 분할됨. 한전은 수익성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판매사업자라는 측면에서 공익적 기능인 부하관리사업을 자발적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고, 가스수요관리는 비용절감에 의한 이익창출이 가스공사에게만 돌아가 자체 추진이 가능함 	<p>【수용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한전의 민영화 논의도 중단된 상태라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부하관리사업을 기금 지원 없이 한전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에너지절 약시설설 치사업 (용자)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543,650 백만원)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추경예산 편성당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투자사업(300억원)과 건물효율등급인증 건물(200억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관련사업의 집행액은 당초 예산액보다도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추경예산은 중점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이나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관련 사업이 크게 위축되어 계획과 집행액에 차이가 발생하였음 - 2010년도 예산편성시에도 시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 결과, 전년도 실적집행액, 정책적 중요성 등을 반영할 계획임 	<p>【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계획 수립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세부사업별 시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2010년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9	전력산업기 반기금 여유자금 운용 손실 발생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 기금은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자산운용지침이 위험성 높은 자산운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위주로 자산을 운영하였음. 특히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주가지수연계펀드에 연평균 1,988억원을 투자, 77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 전력기반조성센터가 주가지수연계형 파생상품인 ELF에 투자하여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은 자산운용지침상의 상품선정, 리스크 한도, 자원배분안 등의 지식경제부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임 -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중장기 투자자산군을 확대 운용하도록 자산운용지침을 개정하였음 	<p>【조치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운용지침을 2009년 6월 19일 개정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운용지침에 중장기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군을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할 것 		

22. 중소기업청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	신용보증 기관 출연 (일반회계) (270,000 백만원)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관 출연사업예산을 전용하였으나 이는 2009년 예산 편성시 새로운 재정 수요가 되었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이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재정지원의 효과에 대한 엄밀한 검증 없이 국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변경 집행한 것은 부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결산 결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리스크 관리효율화에 따른 경영수지 호전으로 예산절감을 추진하였으나 향후 경기동향 및 중소기업 경영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정부 출연금 산정의 적적성을 기하겠음 	<p>【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을 수용하여 향후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임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정부는 예산 절감 계획을 수립·운용함에 있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성격, 탄력적 대응 필요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2	지역신용 보증재단 보증지원 (일반회계) (18,000 백만원)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된 예산의 전용이 결정되기 전에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사업을 시작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6조의 전용절차 위반으로 볼 수 있음 - 중소기업청은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에서 5%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150억원을 전용하였으나 2008년은 시행 첫해로 대위변제 등의 발생 비율이 높지 않아 실제 사고보전금 규모가 19억원에 그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은 기본재산 범위 내에서 운용배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즉시 예산 투입이 없어도 시행 가능하였음 -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은 보증기간이 5년으로 손실도 5년간 지속 발생하게 되므로 단년도 출연금이 남았다고 하여 예산이 과다 추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p>【수용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내에서 전용 절차를 규정한 취지는 전용을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문제임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출연금 예산은 매년 손실발생 규모를 예측하여 지원하는 형태로 편성되어 왔음. 2008년 전용예산만 향후 5년 동안 발생할 손실금 규모로 편성한 것은 합리성이 부족함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국가재정법의 전용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필요한 것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추계·전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3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일반회계) (580,545 백만원)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이나 경영 능력 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 R&D사업의 성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의 R&D사업이 선도과제 위주로 대형화됨에 따라 창업기업은 참여 자체가 곤란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성과 분석 시 2009년의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R&D 전 사업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추진하겠음 - 향후 신기술사업화평가 및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 등 창업 7년 이내 기업 전용 R&D 기획 및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창업 초기기업이 정부 R&D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를 강화하겠음 	<p>【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을 수용하여 향후 계획을 수립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 DB를 구축·관리할 필요가 있음 - 기술혁신역량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R&D사업의 경우 참여자격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식 등 창업 기업 배려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4	기술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 (일반회계) (3,200 백만원)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노비즈 기업 확대에 따라 예산액을 초과하여 평가액을 집행함 - 이노비즈 기업 인증제도가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하였다는 평가와 시장에 정확한 신호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상반된 평가가 존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부터 인증기업이 평가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평가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향후 문제 발생소지 없음 - 현재까지 연구기관별 보고서에서 나타난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투입요소, 경영성과 등의 차이점에 대하여 전문가팀을 구성, 점검할 계획임 	<p>【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을 수용하여 향후 계획을 수립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업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전용이나 예비비 등을 이용하여 예산을 증액하거나 사업의 지원방식을 변경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할 것 - 이노비즈 인증 성과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결과에 따라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5	신기술사업화평가 (일반회계) (3,000 백만원)	문제점	- 신기술사업화평가사업의 본래 취지와 달리 기술혁신개발사업과 연계 추진 시 1차 현장평가만 대체 하고 2차 기술성·사업성 평가는 별도로 수행하여 효율성이 저하	- 향후 동 사업과 기술개발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기술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여나가겠음	【동의】 - 지적을 수용하여 향후 계획을 수립
시정의견	- 향후 사업을 연계 추진할 때는 사업 추진 전에 확실한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6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일반회계) (14,436 백만원)	문제점	- 법률의 통과를 전제로 편성한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예산을 전액 다른 사업에 전용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위배	- 직능인이나 시장상인을 지원하는 것은 크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향후 예산 전용시 예산 편성 목적 및 사업간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하겠음	【동의】 - 지적을 수용하여 향후 계획을 수립
시정의견	- 향후 법률의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국회 예산안 심의중이라도 사업 중단 계획이 정부 내부에서 수립된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7	시장경영 혁신지원 (일반회계) (2,719 백만원)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할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08년에 전체 사업비의 3.9%인 3억 900만원만 집행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위배될 수 있음 - 문화·관광형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1개 시장에 대하여만 중기청과 문화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등 부처간 협조가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하여 심사부터 지원까지 문화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임 	<p>【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을 수용하여 향후 계획을 수립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신규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많은 예산을 전용하고 그 대부분을 다음해에 집행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 문화부와 중기청은 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8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196,766 백만원)	문 제 점	-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행정절차, 사업부지 확보, 보상, 및 민간부담금의 확보 지연으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음	- 2009년 8월 중 지자체 선매수 부지에 대한 지자체 매칭비율 인정, 도시계획시설변경 절차 완료된 곳에 우선 지원 등을 시설현대화 운영지침에 반영하여 개정할 계획임	【동의】 - 지적을 수용하여 향후 계획을 수립
		시정의견	- 도시계획 시설변경 절차 완료된 시장에 대한 우선 지원, 연차적 예산 편성 등 절차의 보완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9	중소기업 정책정보 시스템 고도화 (일반회계) (2,495 백만원)	문 제 점	-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은 2006년부터 SPi-1357이란 브랜드로 운영, 그 독창성과 기술성을 인정받아 특허권을 획득하고 홍보활동을 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브랜드를 변경	- 200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SPi-1357과 중기청 브랜드 이미지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동 정보망의 기능이 정책정보 제공에서 전문가 상담, 현장클리닉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 정책정보 포털사이트로 확대됨에 따라 브랜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임	【동의】 -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브랜드 변경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시스템의 확대 등을 통해 브랜드 변경이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음
		시정의견	- 향후 정부 운영시스템에 대한 브랜드 변경 시 변경 필요성 등에 대하여 먼저 객관적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		

23. 특허청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	절감실적의 과장	문 제 점	- 수요자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사업에서 예산상 확정된 사업 시기를 연기한 것이나 특허기술시작품 제작사업에서 사업 물량을 축소 추진한 것은 실제 예산절감이라 보기 어려움	- 지적인 바와 같이 실질적 예산절감으로 보기 어려운 면도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집행하겠음	【동의】 - 지적을 수용하여 향후 계획 수립
		시정의견	- 향후 예산절감 대상 사업 선정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		
2	이·전용을 통한 신규사업의 추진	문 제 점	- 국회에서 심의 확정하지 않은 사업을 다른 사업의 이·전용을 통하여 신규 추진하는 것은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e-연구노트 개발 및 보급사업, 지역지재권 창출지원: 범국민 발명인식제고, 비영어권 브랜드 지원, 특허전략전문가 파견) 예산의 목적 외 집행에 해당	- 2008년은 정부의 예산 10% 절감 및 활용지침에 따라 추진한 특수한 경우이나 향후에는 예산의 안정적 집행을 위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동의】 - 지적을 수용하여 향후 계획 수립
		시정의견	- 국회가 예산을 심의·확정한 이후에는 사업 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4. 보건복지가족부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	생계급여 (일반회계) (2,256,383 백만원)	문 제 점	- 예산편성 당시 부정확한 추계로 2008년 예산액 2조 2,564억원 중에서 전용 238억원, 불용 173억원 발생	- 2010년 예산은 가구별로 산정방식을 변경하였으며, 종전 경로연금 소득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었으며, 수급자수는 신규 수급자 수와 탈락자 수 추이를 반영하였으므로 부정수급자 비율은 탈락자 수 추이에 포함되어 산정됨	【동의】 - 경로연금 차액부분과 부정수급자 비율을 반영하여 2010년 예산안 편성함
	시정의견	- 경로연금 차액부분을 1인당 평균소득 추정에 반영하고, 3년 평균 부정수급자 비율을 생계급여 수급자 수 산정하는데 반영 필요			
2	기초노령 연금 (일반회계) (1,594,768 백만원)	문 제 점	- 연금급여가 20%씩 감액되는 부부공동 수급비율을 높게 가정했기 때문에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여 예비비 30억원, 전용 41억원을 받음	- 2009년 예산 편성 시 부부동시 수급비율 등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조정 반영하였으나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주요 변수가 변동되는 한계점 발생 - 부정수급자는 집행과정에서 발생하고 회계연도가 지나서 회수되는 경우 세입으로 계상되므로 부정수급자 비율을 예산 편성 시 차감변수로 반영하기는 어려움	【일부동의】 - 2009년 예산 편성 시 부부공동 수급비율은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추정 - 부정수급자 비율을 반영하는 문제는 기초노령연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급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반영노력 필요
	시정의견	-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부부가구 수급을 추정 필요 및 부정수급자비율을 매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편성하는데 반영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3	장애수당 (일반회계) (327,891 백만원)	문 제 점	- 장애수당 지급예산의 연례적 과다 편성	- 2009년도 예산은 2008년도 실 집행실적에 근거하여 편성하였고, 사회복지통합망 구축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를 발굴	【동의】 - 2009년 5월 실집행실적이 인원수 기준으로 97%로 개선되고 있는 점을 보아 2009년에는 비교적 대상자수를 정확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임
	시정의견	-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급자의 정확한 추계 필요			
4	사회복무 요원 직무교육 (일반회계) (8,588 백만원)	문 제 점	- 예산편성 시(6~8월) 가정하 직무교육인력이 과다 추정됨으로써 실집행률이 78.8%로 저조	- 사회복지부요원에 대한 각 부처 수요조사 기간 및 병무청 배정인원 통보기한 개정을 추진 중	【동의】 - 병무청에서 병역법 시행령에 현 수요조사, 배정인원 확정기간을 개정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의견	- 사회복지부요원의 배정확정시점을 예산편성 이전시점(6~8월)으로 병역법 시행령 개정 필요			
5	보건복지 시설기능 보강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583,608 백만원)	문 제 점	- 장기간의 시설 건축기간, 지역주민의 납비현상 등으로 예산현액 6,123억원 중에서 2,855억원만 집행함으로써 집행실적 저조	- 2008년 노인복지사업지침을 개정, 유희 공공시설의 적극적 활용, 그린벨트 지역에 제한적으로 보건복지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 중	【동의】 - 대부분의 개선방향을 반영하고 시행 중에 있음
	시정의견	- 집행부진 원인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명하고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함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6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 (일반회계) (2,000 백만원)	문 제 점	- 사업수행기관이 사회연대은행 등 4곳에 불과해 창업자금을 지원한 전체 자활공동체 39곳 중에서 수도권에 밀집	- 2009년부터 지역별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여(전국 19개 기관)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동의】 - 국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초기단계이긴 하나, 지역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9년부터 사업수행기관을 확대할 계획으로 보임
		시정의견	- 지역주민의 사업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역사업수행기관 지속적으로 발굴·확대 필요		
7	지역복지 서비스혁신 (일반회계) (49,354 백만원)	문 제 점	- 사업성고가 낮은 유형사업들로 인해 실집행률이 77.8%로 저조	- 사업성고나 투자 효율성이 낮은 일부사업의 경우 차년 사업 중단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사업의 보편적 수요, 지역적 확대가 필요한 사업은 전국사업화 등 향후 사업의 효과성 극대화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임	【동의】 - 동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수행하는 등 동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임
		시정의견	- 사업성고나 투자효율성이 낮은 일부사업의 지원 중단 혹은 유사기능 사업들의 조정 필요		
8	노인일자리 확충 (일반회계) (83,328 백만원)	문 제 점	- 유사한 일자리 유형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는 노인이 적음	- 동일한 산재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중(사회복지사업으로 통일) - 노인일자리 박람회의 명칭을 다각화하고 행사내용을 다양화함으로써 취업알선쪽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계획	【동의】 - 산재보험료 집행 차별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노인일자리 박람회는 2009년부터 취업알선쪽으로 초점을 맞추어 노인들의 취업률을 제고할 것으로 보임
		시정의견	- 동일 유형에 해당되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산재보험료 적용 필요, 노인일자리 박람회의 내실화 제고 및 취업노인들의 사후관리 강화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9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일반회계) (18,641 백만원) 아이돌보미지원 (일반회계) (5,451 백만원)	문제점	- 급증하는 수요를 부정확하게 예측하여 예산을 과소 편성 - 이를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확보 이후에도 지원조건을 변경	-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전체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200% 이하이나, 예산이 부족한 대상은 50% 이하이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50% 이하에 지원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예산심의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곤란함	【일부동의】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예산처의 의견을 모두 수용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예산부족이 50% 이하의 가구에서 발생했으나, 동 사업의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지원대상은 200% 이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정 필요
		시정의견	- 당초 예산 편성 후에 정부가 임의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 지양 필요		
10	청소년육성기금 세출사업 (청소년육성기금) (82,865 백만원)	문제점	- 일반회계와 청소년육성기금은 그 설치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당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편의적으로 청소년지원사업을 편성함에 따라 일반회계 사업과 기금사업간에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 기금 사업 중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사업,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법령 등에 규정한 국가 의무적 지출사업 등으로 일반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함	【동의】 - 청소년육성기금사업 중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일반회계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일반회계사업 중 많은 사업들이 청소년육성기금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므로 이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시정의견	- 청소년육성기금 세출사업 중 사회적 일자리와 관련된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1	청소년공 부방운영 지원 (균특회계) (2,551 백만원)	문 제 점	- 청소년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와 비교했을 때 주 사업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	- 청소년공부방은 지역아동센터와 기능 및 운영 등에서 유사한 면이 많아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을 추진 중임	【동의】 - 동 사업은 국무총리실에서 추진 중인 복지사업 정비통합방안에 포함될 정도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의견	- 법적근거가 명확한 지역아동센터에 청소년공부방을 흡수시켜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서비스 시설로 활성화 필요				
12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운영 및 지원 (정부지원분 일반회계) (153,025 백만원)	문 제 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요비용 중 지방부담이 국고부담의 2.1배에 달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가중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증가에 따라 지방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복지의 주요재원인 분권교부세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	【동의】 -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한 지방비 부담완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의견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인 만큼 타 노인복지사업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책임이 중요하므로, 노인시설운영지원사업 등 3개 생활시설운영사업을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환원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3	영아기본 보조금 지원 (일반회계) (2,298 백만원)	문 제 점	-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은 예산액 대비 31% 초과지출되었으며, 영아기본보조금 확대가 서비스 질이 검증되지 않은 소규모 가정보육시설의 공급 증가 초래	- 부정수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영아기본보조금 사업비 부족의 주된 사유는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답변	【일부동의】 - 무차별적으로 생겨나는 민간보육시설을 조정하기 위해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연계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시정의견	- 기본보조금 지원과 평가인증을 연계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감독 필요		
14	건강보험 재정의 책임성 취약 및 기금화 문제 (건보 지출: 275,412억원) (재정지원: 40,262억원)	문 제 점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중장기적 재정계획에 토대를 두지 않고, 전년도 재정수지 따라 좌우되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저해 -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호전될 때 일회성 조치로 시행하는 대규모 결손처분은 급여제한을 받고 있는 장기연체자의 의료보장 수급권 회복에 한계가 있음 - 급여비규모가 큰 일부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한 것은 건보에 상당한 재정부담 전가	- 건강보험 보장성확대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년 보험료수입 등 건강보험 재정여건에 따라 보장성 확대규모, 시기 및 우선순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 부과징수가 어려운 저소득층 체납보험료에 대해 매년 분기별로 정기적인 결손처분과 비정기적인 결손처분을 실시하며, 체납자사망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전환하는 경우, 결손처분시점까지의 체납금액을 결손처분함 - 일부 차상위 계층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한 것은 의료급여 재정위기에 대처하고,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신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정된 복지재원의 합리적	【답변회피: 핵심사항인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한 복지부 의견회피】 - 특히, 국고 과소지원과 관련된 국고지원 개선방안(복지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기금화가 선행된 후, 건보재정의 투명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국회가 예산안 심사 시 건보재정수지 내역을 철저히 검토하여 판단 필요

연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건보지원 법정기준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비중은 2008년 결산결과 16.5% 수준 <p>시정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사회에서 재정위험요인이 큰 건보재정에 대한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정부 통합재정 내에서 운용되도록 국민건강보험 기금화 필요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중장기적인 재정수지에 근거를 두고, 보험료 인상 등 전반적인 재원조달방안의 틀에서 논의 필요 - 일회성 조치의 결손처분을 지양하고 빈곤층이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 강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분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 - 국고 과소지원 논란 해소 및 예측가능한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국고지원 개선방안 검토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설치는 「건강보험법」 뿐 아니라, 「국가재정법」 개정을 수반하는 비중 있는 재정제도 개혁이므로, 기획재정부 의견청취 필요 - 건강보험이 통합재정에서 제외됨으로써, 정부 총지출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5.7%p 과소평가(현행 26.7% → 건보반영시 32.4%: 재정 미반영분 25.7조원 감안, 2009 기준) 되어, 재원배분에 관한 결정을 왜곡시킬 우려 있음 - 공적부조(국가부담) 대상인 일부 차상위계층 의료비를 사회보험 부담으로 전환한 것은 재정규율 훼손문제 제기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5	오송생명 과학단지 이전 (일반회계) (59,895 백만원)	문 제 점	- 사전사업계획 미비로 인해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총사업비 변동과 타당성 재검증 실시로 인하여 사업예산이 불용 및 이월되었으며, 2007년의 경우 실시설계 완료 후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예비낙찰자가 2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선정이 지연됨 - 2009년에는 건축공정을 68%수준을 달성할 계획이며, 철저한 공정관리로 집행부진을 최소화하겠으며, '10.10월 국책기관 신축·이전공사 완공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동의】 - 철저한 공정관리로 집행부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임
16	우수 한약육성 (일반회계) (810백만원)	문 제 점	- 용역발주 지원으로 인해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 한약재 특성상 통상 10~11월에 수확이 되므로 연구시작이 연도말이 되며, 유통기한에 따른 성분변화 조사 등 1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부득이하게 차년도로 이월되는 실정임 - 2007년도 연구사업이 당초 2008. 9월에 완료예정이었으나 외국 한약재 유통기한 조사 등을 위하여 연구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2008. 11월에 완료됨에 따라 2008년도 사업이 지연	【동의】 - 2009년도에는 한약재의 원산지과 생육년수 감별 기법(식물대사체학) 연구를 추진하여 현재 공모가 완료되었고, 연구기관을 7월중에 선정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으로 보임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7	국립재활 원-재활연 구소 건립 (책특회계) (1,988 백만원)	문 제 점	- 사전사업계획 미비로 인해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 재활연구소 건립은 '07.11월 이미 준공되었고, '08년 예산은 연구소에서 사용할 연구장비 구입비로서 재활연구소 직제가 당초보다 늦은 '08.8월 개정되었고, 연구인력 채용 등의 기간이 소요되어 재활연구소가 '08.11월에 개소됨으로 외자장비 조달계약이 '08.12월에 체결되었음. 이에 따라 부득이 장비도입기간이 부족하여 관련예산을 이월 집행하게 되었음	【동의】 - 이월예산은 2009. 6월 현재 도입이 완료되고, 관련예산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보임
18	국민연금 기금 운영 (국민연금 기금) (235,520,800 백만원)	문 제 점	- 운용실적 저조 및 기금운용 조직의 전문성 미흡	-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상설화하고, 자산운용 전담기관인 기금운용공사를 별도 설립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08.8.6) 이후 국회에서 심의 중임	【동의】 - 공단은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임

25. 식품의약품안전청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	식품안전성 제고 관련사업 (일반회계) (24,439 백만원)	<p>문 제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이물혼입사고는 제조단계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제조과정에 대한 관리부실과 제조된 식품에 대한 위생검사 부실에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제조과정관리와 관련 ‘HACCP제도활성화사업’이 추진 중이나, 전체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보면 2.1%만 동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 ○ 2008년 지도·감독결과, 제조·가공된 식품의 위생검사를 수행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68개 중 27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식품안전성에 우려를 낳고 있음 -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과자류나 농산물의 수입증가와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나 첨가물을 사용하는 식품의 증가에 대응하여 이들 식품에 대한 기준이나 규격의 제·개정이 시급하나, 이러한 작업의 실적이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시험검사기관 도입을 위한 제반 사항 검토를 완료하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임 -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HACCP 적용업체를 확대하고, 적용업체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지자체 관련 공무원 직무교육 및 지자체별 식품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정기평가제 등을 도입할 예정임 - 2,513개 식품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여 717개 조치대상 식품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중 513건에 대해서는 입안예고 및 고시완료 하였음 	<p>【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개선작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판단됨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제조·유통의 각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우수시험검사기관' 확보가 시급 ○ HACCP제도 활성화를 통한 식품제조과정 관리노력 필요 ○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조속한 재설정 필요 ○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한 중앙-지자체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필요 		

26. 환경부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	환경부 재정운용 (환경개선 특별회계 외 3개 회계) (세출예산 3조 6,095억원)	문제점	<p><환경재정운용의 구조적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전입금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재정적 불안정성 - 자체세입 기반취약 - 환경관련 부담금의 부적절한 운용 -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에정 (2009년 12월 31일)에 따른 대체세입원 마련 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탄소세 도입 등 친환경적 세제개편을 유도하고, 이런 세제개편의 기반으로 기후친화적 조세체계 구축 용역을 실시하고 재정당국 협의를 지속 추진하겠음 	<p>【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의 핵심사항인 세제개편을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한 관련 용역실시 및 관계기관 협의 등 개선노력이 드러나고 있음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세 도입 등 현행 에너지 관련 조세부과체계의 개편을 통한 대체세입원 확보 - 주요 자체세입원인 환경관련 부담금의 운용개선 - 에너지세제개편과 부담금운용개선을 통한 안전적 재원확보를 바탕으로 일반회계를 설치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와 분리운용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2	지방상수도사업(환경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31,595백만원)	<p>문 제 점</p> <p><지방상수도사업운영체계의 비효율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광역시 상수도 보급률은 99.1%, 농어촌 면지역은 45.2%에 불과하는 등의 지역간 상수도 보급격차 - 정수장 가동률이 53% 수준(적정 가동률 80%)의 저조함을 보임에도 시설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 지자체별 수도사업 운영에 따른 영세성으로, 높은 생산원가 및 낮은 수도요금으로 수도사업 적자 발생 - 적자운영은 사후관리 부실로 연결되어 노후수도관 누수로 매년 6,054억원의 손실액 발생 및 부채 가중 - 취수원의 92.8%를 지표수인 하천수와 호소수(댐 포함)에 의존하고 있어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 등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대체수자원 개발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어촌간 상수도 보급격차 해결을 위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및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지속 추진하여 2014년까지 면단위 지역 상수도보급률을 75%까지 제고하도록 계획 - 급수체계 조정을 통해 중복·과잉투자로 가동률이 낮은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수도시설 신규 건설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간 공급불균형 해소 등 투자효율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음 - 164개 수도사업을 규모의 경제단위로 순차 통합하여 광역권으로 재편함으로써 경영효율화 달성 및 지역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음 - 상수관망관리의 선진화를 위하여 기존 용자에서 국고보조로 노후수도관사업 지원방식을 전환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겠음 -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강변여과 등 간접취수원 및 대체취수원 개발가능 여부 조사사업 추진을 추진하고 유역별 취수체계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모하도록 하겠음 	<p>【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상수도사업체계의 재정비가 추진 중인 것으로 판단됨

연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시정의견 - 행정구역 단위의 사업방식에서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는 광역차원의 통합적 지방상수도사업방식으로 운영체계의 전환이 요구됨 - 광역적 통합관리권역의 설정과 통합관리 운영주체에 대한 결정 필요 - 광역차원의 지방상수도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및 노후수도관 보수사업 국고지원 방안 마련 필요		
3	하수도 사업(환경 개선특별 회계,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1조 4,496억원)	문제점 <하수도사업의 비효율적 운영> - 지역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 심각 -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자체별로 사업이 추진되어 전체 하수처리장의 가동률이 70% 이하로 저조 - 하수도요금과 처리원가간의 격차 확대로 사업운영 적자 발생 시정의견 - 하수도사업 운영상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역단위의 통합적 하수도사업 운영체계의 전환이 요구됨	- 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지역에 투자의 비중을 두고 지원하겠으며, 하수관거의 조속한 정비를 통하여 가동률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음 - 하수도사업 부채와 관련하여 하수도 경영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유역단위로 추진되는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댐상류 하수도설치사업을 발전시켜 유역단위 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음	【동의】 -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사업방식을 점차적으로 유역단위 하수도사업체계로 전환해 나아갈 것으로 판단되나, 하수도사업 경영효율화 및 유역단위 하수도사업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4	비점오염원 관리사업 (환경개선 특별회계, 4대강수계 관리기금) (40,541 백만원)	문 제 점	<p><비점오염원관리 부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오염원에 비해 비점오염원에 대한 투자규모도 열악하고, 국고보조율도 저조하여 지자체의 비점오염원관리사업 추진 미흡 -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나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농촌지역 중심으로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비점오염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을 협의 중임 - 유역단위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이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음 	<p>【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점오염원관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의 상당부분이 비점오염원인 점을 감안, 점오염원관리사업과 비점오염원관리사업간 투자비중의 재검토 필요 - 산발적인 저감시설의 설치를 지양하고 유역 전체차원에서 비점오염 저감장치 설치지역이 선정되고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5	폐기물 관리사업 (환경개선 특별회계) (288,429 백만원)	문 제 점	<p><폐기물관리사업 추진기반 정비부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성형 고품연료제품의 품질기준이 부재하고 고품연료제품 발전시설 설치 및 관련 기준과 관련해서는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자체에서 생산된 생활폐기물 고품연료제품이나 민간 고품연료제품의 수요처 확보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자원 에너지화와 관련된 규정의 일원화 등을 위해 폐자원 에너지화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용역 추진하고, 고품연료제품의 수요·공급 균형유지 및 관련 기술 공유 등을 위해 제조자, 사용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고품연료제품 협의회를 구성·추진하고 있음 	<p>【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사업추진기반의 재정비가 추진 중인 것으로 보임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에너지화시설의 설치확대 및 폐기물에너지 보급촉진의 기반이 되는 관련법률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 				
6	보호구역 관리사업 (환경개선 특별회계) (94,914백 만원)	문 제 점	<p><보호구역관리사업의 비체계적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구역 유형별로 명확한 지정 목적, 지정기준 및 관리내용이 차별화되어 있지 못함 - 보호구역관리수단도 출입통제 및 불법행위 단속이 대부분 -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가 상위계획과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실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연구용역사업을 통하여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p>【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보호구역관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추진 중인 것으로 판단됨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p>시정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보호구역 유형별로 명확한 지정 목적, 지정기준, 면적 설정기준이 마련되어 관리내용의 차별화 필요 - 보호구역별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생태교육, 생태체험, 그리고 생태관광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에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 보호구역관리 방안 구축 필요 -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가 '국토환경종합계획'이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과 같은 상위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됨으로써,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에 보호구역제도가 적극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 필요 -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 활용방안 검토 필요 		

27. 노동부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	일자리사업 (3조 7,223억원)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부처에서 수행하는 일자리사업을 기획·총괄하고 조정하는 시스템과 성과평가체계 구축이 미흡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영향평가사업의 근거를 포함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계류 중이며 자치단체의 일자리사업도 일자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중 	【동의】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시스템과 평가체계 구축 - 대규모 재정사업이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사전에 평가, 판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 정보시스템이 지자체 지역 일자리 정보사이트와 연계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1조 222억원)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물품 및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평가 항목에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계획·실적을 포함하는 지자체 표준 조례(안) 작성·배포 중이며, 총리실 및 중기청 등 관계 부처간에 우선구매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협의 중 	【동의】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 필요 - 「국가계약법」에 사회적기업 생산품 수의계약 가능 조항 삽입 및 우선구매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강구 필요 				
3	신규고용 촉진장려금 (고용보험 기금) (174,622 백만원)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고용위기시 사업의 효과가 크게 발휘되어야 함에도, 경기침체시 사업효과 반감 - 하반기 채용수요 감소로 불용액이 증액변경액(173억원)보다 큰 267억원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경제·고용상황과 연계하여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음 	【동의】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촉진효과가 경기침체시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 완화 등 치밀한 제도 설계 필요 및 사전수요예측의 면밀한 검토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4	고용안정 · 직업능력 개발사업 (고용보험 기금) (1조 9,179억원)	문 제 점	- 2008년 143개나 되는 세부사업이 운영됨으로서 사업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운영이 어렵고, 이로 인해 집행실적 부진과 빈번한 계획 변경 초래	- 변경대상사업을 의무지출사업으로 한정하고, 소요재원은 동일 프로그램내 충당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기준 마련·시행 - 2008년 이후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하는 등 2009년에 17개사업 축소하였고, 2010년에도 8개의 세부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축소 운영코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중	【동의】 - 지적사항을 적절히 이행하려고 노력중인 것으로 보임
		시정의견	- 계획변경사유 및 규모, 건수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계획변경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 필요 - 세분화된 사업을 큰 틀로 묶어서 수행하는 방안 검토 필요		
5	직업방송 제작 및 송출사업 (고용보험 기금) (4,646 백만원)	문 제 점	- 시청률이 0.197%에 불과하여 방송의 광역성을 이용한 정보제공이라는 사업목적 달성 미흡 - VOD컨텐츠를 직업방송 홈페이지 및 한경TV홈페이지에 중복하여 서비스하고 등록 컨텐츠 시청 실적도 미미함	- 사업운영방식을 채널임대송출방식에서 별도 전문채널구축 방식으로 전환 - 방송시간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편성을 다양화 및 내실화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음 - 직업방송 별도채널을 구축하여 전용 홈페이지에만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홍보를 확대하여 컨텐츠 이용실적을 제고하도록 하겠음	【동의】 - 다만, 별도 전문채널 구축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것으로 보임
		시정의견	- 사업추진 여부 또는 현재 사업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6	대학취업 지원기능 확충사업 (고용보험 기금) (23,861 백만원)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학 취업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위탁비중 50%이상이라는 응답이 전체응답자 대비 16.8%로 높게 나타남 - 멘토링의 경우, 다른 사업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3.52, 5점만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선정시 「위탁사업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전략수립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사업시행 후에도 「외부 위탁시 선정기준과 사업모니터링 과정」을 평가함으로써 민간위탁사업 정도를 모니터링 - 멘토링이 만족도 조사 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3.52, 5점만점) 나왔다 하더라도, 취업에 필요한 실제 경험전수 및 능력배양을 위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므로 대학취업지원 사업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일부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의 경우, 노동부의 주장이 만족도 조사와 상치하므로, 현장의 수요요구를 다시 파악하여 추진할 필요 있음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비중이 높아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대학은 사업비를 환수하는 등의 조치 필요 - 멘토링 지원여부 재검토 		
7	고용보험 기금 사업 부정수급 (고용보험 기금) (13,576 백만원)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수급은 재정누수뿐만 아니라, 사업수혜의 불공정성 문제 야기 -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조사기법이 미흡하여 담당자의 개인적인 역량과 경험에 의존하여 조사가 이루어짐 -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은 실제 부정수급 유형을 포괄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경보시스템 보완, 조사기법 개발, 현장점검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 경주 - 지방관서별 사업장에 대한 수시점검, 적발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제재조치 등 최대한 노력 중 - 부정수급관련 추가징수액 상향조정(부정수급액 → 5배이하) 등 제재조치 강화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수급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임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수급 자동경보 지표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보험기금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8	산재보험 급여비 (산재보험 기금) (3조 4,219억원)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산재보험급여비 지출액은 2001년 급여비의 2배에 달하며, 급여비 지출 증가의 주요 요인은 연금급여비 지출의 급증 - 책임준비금 수준의 적정여부를 가늠하는 지표가 적절치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급여 누증을 고려한 적정 적립금 확보방안에 대하여 내부 검토 중이며, 안이 확정되는 대로 향후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계획 	【동의】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급여비 지출을 고려한 책임준비금 산정 및 보험료율과 부과방식 조정 등을 통하여 산재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음 		
9	요양비 대부사업 (산재보험 기금) (4,000 백만원)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사업비가 전혀 지출되지 않음 - 현장상황을 반영한 사전수요 예측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집행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산재보험기금사업 중 유사한 내용의 대부사업인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에 통합하여 시행 예정 - 아울러, 제도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방안 검토 예정 	【동의】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보험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폐지 곤란하므로 유사한 내용의 대부사업인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에 통합하여 수행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0	산재예방 사업 (산재보험 기금) (275,040 백만원)	<p>문 제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2,500억원을 상회하는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나, 산업재해 감소 실적은 낮음 - 산재사고자 1만명당 사망자 수도 1.07명(하루 평균 4명 사망)으로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 -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전통적 다발 재해가 전체 재해유형 중 50%를 상회 <p>시정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재해감소를 위해서는 재해다발·취약부문에 특화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법적 규제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수동적 재해예방으로는 재해 감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동하여 예방활동 대책을 마련하도록 독려할 필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다발 취약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기술지원을 확대하는 등 업무상 재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 - 사업장당 지원액은 크나, 수혜사업장 수가 적어 재해예방효과가 제한적인 재정지원사업을 축소하고, 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지원사업을 확대 - 근본 대책으로 노사 협력적 유해·위험관리 활동의 확산 및 노사 안전보건교육·행동변화 유도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방안 추진 	【동의】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1	새터민, 영세자영 업자, 자활대상자 직업훈련 사업 (일반회계) (12,414 백만원)	문 제 점	- 3개 취업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사업 중도탈락율은 12~18%로 타 직업훈련사업보다 높고, 취업률은 50% 이하로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비, 식비 외에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보전 조치는 소요재원(예산), 다른 훈련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겠음 - 새터민,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은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지원 연계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지역전략산업이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직종 등을 중심으로 훈련과정이 개설되도록 노력 중 - 자활훈련은 「저소득층 취업패키지사업」으로 개편하여 자활대상자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 시행 	【동의】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탈락 방지를 위해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보전 조치 강구 필요 - 취업을 향상을 위해 취업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계층별로 차별화하여 추진할 필요 		

28. 국토해양부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	주거환경 개선사업 (균특회계) (122,436 백만원)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연례적 실집행률 저조문제 - 공동주택방식으로 시행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평균 57%) 저조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적기집행과 사업추진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추진현황 등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지원 - 일정 비율이상 예산이 지원되었거나 사업추진이 원활한 곳을 우선지원 - 전면수용에 의한 정비방식을 지양하고, 거점을 활용한 순환정비방식을 통해 원거주민 중심의 사업으로 유도 - 토지보상법 개정(2006.3.)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이 같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착률 증대가 예상됨 	【동의】 - '09년도 6월말 현재 실집행률이 54%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시 지자체의 사전절차 이행여부, 이월액 및 집행능력을 반영한 적정예산편성으로 실집행률 제고가 필요함 -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함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2	임대주택 건설사업 (국민주택 기금) (6,405,040 백만원)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건설 사업의 용자실적 부진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임대자본이전 사업의 경우 입주희망자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주택을 확보하고 쪽방상당소·동사무소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 - 실수요 조사 내용과 입주희망자 특성을 감안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주택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적정하게 편성할 계획임 - 표준건축비 현실화, 10년 임대주택 조기분양을 전환 허용 등 민간 임대주택 참여 활성화 방안 기 시행 중 	<p>【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임대자본이전 사업에 있어 수요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민간참여 방안 마련 및 국민주택기금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출시하는 등 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임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임대자본이전 사업은 부정확한 수요조사로 집행실적이 저조, 수요분석을 통한 적정사업비 편성이 필요함 -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참여부진으로 실적이 저조하므로 효과적인 민간 참여유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국민주택기금의 안정적인 재원마련 방안과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공공이 주도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과 함께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임 - 국민주택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출시하여 임대주택 건설에 지원 중에 있음 -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비에 대한 용역을 재실시하여 비현실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기준에 대한 보다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 등을 강구 중에 있음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3	공공분양 주택공급 관련사업 (국민주택 기금) (1,300,000 백만원)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주택채권 발행 저조로 사업비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분양주택 용자실적이 계획현액 대비 70.2%에 불과함 - 사업비 용자 및 상환 등 금융관련 분야만 관리·감독하고 있어 사업성과, 수요관리, 개선방안 등 실질적 관리체계가 미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출시하여 분양주택 건설에 지원 중임 - 종합저축은 매월 정기적인 납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기금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분양주택 건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기존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을 공공주택건설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 주택 유형별,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 	<p>【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주택기금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출시하고 전담사업 부서를 통한 사업관리를 하고 있으며, 보급자리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는 등 분양주택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임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분양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안정적인 국민주택기금 조성방안 마련이 필요함 - 보급자리 분양주택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4	전세임대 경상보조 사업 (국민주택 기금) (20,523 백만원)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임대경상보조 사업은 지원단가 차이 등의 부정확한 사업비 추계로 인해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의 집행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상보조비 적정소요액이 반영된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함(2009.7.) - 개선된 사업비 산정기준을 반영하여 2009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함(2009년 계획액을 당초 321억원에서 192억원으로 변경함) 	<p>【조치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보조비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보다 현실성 있게 사업비가 편성되도록 조치함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정확한 경상보조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 반영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5	상수도 공급 관련 사업 (일반회계) (30,740 백만원)	문 제 점	-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의 시설중복 및 과잉투자 문제가 존재함	- 적극적인 신규수요처 발굴, 노후된 지방상수도 시설 대체, 미급수지역 공급 등 광역상수도 급수체계조정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동의】 - 광역상수도의 지방상수도와의 시설 중복 및 과잉투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추진 중에 있음
	시정의견	- 광역 및 지방상수도간 중복 및 과잉투자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한강 하류권 등 6개 권역에 대한 광역상수도 급수체계조정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6	국가하천 정비사업 (일반회계) (330,000 백만원)	문 제 점	- 국가하천정비 사업에 있어 사전사업계획이 미비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문제가 존재함	- 예산편성 시 차년도에 발생하는 태풍, 홍수 등 기상이변에 따른 제방 및 하천시설 피해 복구 사업내역 확정이 곤란하여 재정당국과 총액계상사업 지정을 협의토록 하겠음	【일부동의】 - 현재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국가하천정비사업은 총액계상사업으로 지정하기 보다는 사업에 대해 국회의 효과적인 심의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정의견	- 하천별 구체적인 세부계획 및 내용에 대해 국회 심의가 가능토록 현재의 예산편성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효과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국가하천유지관리비 지원 필요함	- 관리체제 개선, 소요재원 산정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정 소요액이 반영되도록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음		
7	하천재해 예방사업 (균특회계) (399,800 백만원)	문 제 점	- 하천재해예방 사업은 지자체 실집행실적이 저조함	- 2009년에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비 확보이전에 우선 국비로 사업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이월액 최소화 가능	【동의】 - 지자체의 사업추진실적 및 적기추진가능성을 고려한 예산배정 등 이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 중에 있음
	시정의견	- 지자체 실집행실적 제고 및 재정여건을 고려한 국비 보조비율 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함	- 2010년 예산편성 시 지자체의 재해예방사업 추진실적, 사업의 적기추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토록 조치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8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교특회계) (1,008,500 백만원)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당초 예산 7,935억원의 28.3%에 해당하는 2,248억원이 전용 또는 조정이 발생한 바, 72개 사업 중 10개 사업을 제외한 62개 사업에서 전용·조정이 발생하여 과도한 사업변경이 이루어졌음. 과도한 전용·조정에 의한 사업 변경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형해화 할 수 있음 - '08년 추경예산이 편성된 11개 사업 중 9개 사업에서 전용·조정감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송산-진안 등 3개 사업의 경우 추경액 전액이 타 사업비로 전용·조정됨. 이는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추경예산편성에 의한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기획재정부와 신규사업 협의(통상 3~4월)를 조기에 완료하고 연내 집행가능 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임 - 향후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추경예산 편성 시에도 연내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당초 목적대로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 	【동의】

연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p>시정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전용이나 조정으로 사실상 사업의 내용을 집행과정에서 변경하는 것은 국회가 심의·확정한 당초 예산의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사례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으로 시정이 요구됨 -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추진 여건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전용 및 조정을 최소화할 것 		
9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지원사업 (교특회계) (723,567 백만원)	<p>문 제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지원사업의 집행률이 2005년 73.0%, 2006년 41.2%, 2007년 50.3%, 2008년 62.1%에 불과하여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매년 과다 이월이 반복되고 있음 <p>시정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기획재정부와 신규사업 협의(통상 3~4월)를 조기에 완료하고 연내 집행가능 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임 - 균특회계 세수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고, 효율적인 자금배정 및 예산집행 방안 마련 -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배정('09.1)하여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분기별로 지자체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독려 -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의 중요성 및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편성할 계획임 	【동의】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p>있는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함</p>		
10	<p>도시철도 건설사업 (교특회계) (751,279 백만원)</p>	<p>문 제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하철 8호선연장사업”과 “인덕원-병점 복선전철사업”의 경우 지자체와의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이 당초 편성된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고 전액 타 사업비로 전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편성·집행 사례임 - “대구지하철2호선”의 경우 지자체단계에서 추경예산 추가 편성액 (170억원)을 초과하는 279억원이 이월되어 추경편성의 취지를 무색하게하고 있는 바, 이는 동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국토해양부의 2008년도 추경예산 편성상의 오류로 지적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준비 절차를 철저히 한 후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전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 지자체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배정하고,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관리를 하겠음 -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연내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집행토록 하겠음 - 광역철도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 중('09. 4~) - 민자사업 각 추진 절차마다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 추진 	<p>【동의】</p>

연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p>시정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 지정과 관련한 분쟁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도건설법」 등 관련 법령에 광역철도와 도시철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상관련 행정절차, 관계기관 협의 등 지연되고 있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효율적으로 공정을 관리하는 등 집행실적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1	인천국제공항철도 운영지원 (교특회계) (1,040 백만원)	<p>문 제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철도의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인해 1단계 운영결과, 실제수요가 예측치의 6~7%로 극히 저조함. 이에 따라 운영수입보장금의 규모는 2007년도분 1,093억원과 2008년도분 1,602억원 등 2년간 총 2,695억원임 - 2011~2031년까지 예측수요 대비 실제수요가 22.3~32.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수요부족으로 운영기간(3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철도의 민간지분을 철도공사가 인수하여 운영수입보장률을 대폭 낮추는(90%→58%) 「공항철도 합리화 대책」을 마련하여(09.3)하여 추진 중 - 철도공사 인수를 계기로 KTX·수도권 전철 등 연계체계 확립 및 공항철도 경영효율화 조기 추진 등으로 수요 창출 및 활성화 도모 	<p>【일부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공사가 인천공항철도(주)의 지분을 매입하여 경영에 참여할 경우 경영악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필요

연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시정의견	<p>동안 운영수입보조금이 총 14조원에 달해 재정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p> <p>- 향후 운영수입보장금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요예측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운영수입보장률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p>		
12	부산신항 개발사업 (교특회계) (518,958 백만원)	문제점	<p>- 2008년도 부산신항 개발사업의 결산결과 전용 11건, 조정 20건 등 총 31건의 예산변동이 발생하였음. 동 사업은 2007년도에도 전용(11건) 및 조정(13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바, 연례적으로 타 항만간 또는 세부사업간 과도한 전용 및 조정이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음</p> <p>- 이처럼 과도한 전용이나 조정으로 사실상 사업의 내용을 집행과정에서 변경하는 것은 국회가 심의·확정한 당초</p>	<p>- 당해연도 지자체 지방비 확보,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실적 분석을 통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집행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p> <p>- 사전 행정절차 및 사업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음</p> <p>- 앞으로 선행절차 이행 및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 사업비의 전용·조정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음</p>	【동의】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예산의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사례로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제한할 수 있음		
		시정의견	- 향후 예산편성 시 선행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소요를 반영함으로써 전용 및 조정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13	광양항 3단계 건설사업 (교특회계) (39,700 백만원)	문 제 점	- 연례적인 집행부진으로 대규모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미집행 예산을 타 사업 조정재원으로 사용	- 당해연도 사업추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가능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겠음 - 사업추진 시 철저히 관리하여 집행부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음	【동의】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4	평택· 당진항 개발사업 (교특회계) (102,981 백만원)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년 민자분담금 예산액의 64.3%를 타 사업비로 전용하였음. 민자사업의 공정률 부진에 따른 민자분담금 불용예상액을 항만간 전용을 통하여 타 사업비에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으로 지적될 수 있음 - 시설비의 경우 6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부산신항 등 타 항만 사업비로 전용되는 등 항만간 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음 	【동의】
시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자사업의 추진실적(공정률)을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 향후 예산편성 시 선행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소요를 반영함으로써 전용 및 이월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5	목포신항 개발사업 (교특회계) (9,982 백만원)	문 제 점	- 2004년 6월 목포신항 개장이후 물동량 감소로 운영실적이 부진하여 운영수입보장금이 급격히 증가	- 목포신항 활성화와 운영수입보장금 축소를 위한 변경실시협약 체결('09.6) - 국가의 운영수입보장액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규항로 개설, Port Sales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음	【동의】
16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 (교특회계) (603,300 백만원)	문 제 점	-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사업은 2008년 전용을 통해 전체 예산의 22.0%인 총 1,326억원의 예산변경(663억원을 전용을 통해 증액, 663억원을 전용을 통해 감액)이 있었음	- 당해연도 집행가능성 및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점검·독려 등을 통한 철저한 집행관리를 이행 중임	【동의】
		시정의견	- 동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과도하게 발생하는 예산변경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17	살고싶은 도시만들 기사업 (균특회계) (15,000 백만원)	문 제 점	- 살고싶은도시만들기지원 사업은 예산배정 지연 및 과도한 이월액으로 인해 2008년 실집행률이 51.6%에 불과함	- 보조금 조기교부로 예산 집행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향후 이월이 발생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안 심의 시 패널티를 부여하여 지자체의 책임감을 제고 할 예정임	【동의】
		시정의견	-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예산의 집행가능성과 전년도 이월액의 규모 등을 파악하여 지자체별 적정예산 배분계획 마련 필요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8	혁신도시 건설지원 사업 (혁특회계) (111,300 백만원)	문 제 점	- 혁신도시건설지원 사업은 2008년 지자체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30%에 불과함	- 집행실적 및 사업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실제소요 예산을 배정하고, 매월 집행실적 점검 및 집행애로 해소 등을 통해 실집행률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동의】
	시정의견	-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사업단계별 적정예산 편성 필요 및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철저한 집행관리와 감시감독 필요			
19	대도시권 교통혼잡 도로 개선사업 (균특회계) (42,700 백만원)	문 제 점	- 실시설계비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과다이월 및 불용이 반복됨 - 자치단체보조금도 지자체 대응자금 미확보 및 사전 준비 미흡으로 연례적으로 과다 불용 및 집행부진	- 2008년 실시설계비 집행률은 예산절감을 위해 불용한 설계비(16억원)을 제외하면 전년보다 상당히 개선됨 - 향후 국고 지원조건 상향조정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용지비 확보여부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계획임 - '10년부터는 민원, 용지보상,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시행 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	【동의】
20	호남고속 철도건설 사업 (교특회계) (70,600 백만원)	문 제 점	- 2006~2008년까지 실제 집행률이 7.6~54.3%에 불과하고 출연사업자 단계에서 대규모 이월이 반복됨 - 용지보상, 환경문제 등 향후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극 해소함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지연된 기본·실시설계는 설계기간과 실시계획 협의기간을 단축하여 당초 목표대로 착공('09.9)할 계획임 - 향후 사업지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동의】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21	대전지하 철건설 국고보조 사업	문 제 점	- 대전광역시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완료한 후 256억 1,900만원이 남았는데도 1년 이상 반납하지 않았음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절차 이행을 대전시에 요구 중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 정산서류 제출시 정산절차를 마무리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토록 조치할 계획임	【동의】
22	주거환경 개선사업 (균특회계) (122,436 백만원)	문 제 점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정산해야 하나 일부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집행함	- 2009.4.21 국토해양부는 부산진구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요청 등 시정조치를 요구함 - 부산진구의 보조금 반납은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 등의 사유로 2009년 추경확보가 곤란하여 2010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 후 반납할 예정임	【동의】
	시정의견	- 국고보조금 미반납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관 중앙부처와 예산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29. 해양경찰청

연 번	사업명 (회계·기금명) (2008예산액)	국회에산정책처 분석: 문제점 및 시정의견		소관부처 의견	부처의견 검토결과
1	파출장소 신축 및 관서 개보수 (일반회계) (1,782 백만원)	문제점	- 유사성이 없는 사업으로부터 전용하여 '여수 방재 비축기지 신축'이라는 신규사업(35억원)을 추진	- "허베이 스피리트호"오염사고 후속 조치로서 추진한 것이며, 초대형 오염사고는 신속한 자재 투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대응에 필요한 대규모 자재비축이 필요하므로 시급성이 인정되어 절감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하였음	【수용불가】 -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에 대해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절감한 예산을 불용처리하도록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시정의견	- 예산절감대상 사업은 예산편성단계에서 삭감하도록 하고, 국회가 예산을 심의·확정한 이후에는 그 변경을 최소화하며, 절감한 예산은 불용처리하도록 할 것			

집필진

■ 총괄 · 기획

예산분석실장	김호성
예산분석심의관	박인화
예산분석실	천우정 팀장, 송병철 팀장, 조영철 팀장

■ 세부 집필

경제예산분석팀	서세욱, 유인규, 황선호, 전중인
산업예산분석팀	전용수, 이화실, 양성선, 변재연, 한정수
사회예산분석팀	이형진, 강상규, 김대철, 김성은, 이진우, 장은덕
행정예산분석팀	문종열, 오세일, 김민재, 부길환, 김경수

■ 행정지원 · 편집

행정예산분석팀	엄상미
---------	-----

2009년 예산정책보고서 발간 현황 목록

	제 목	집필진	발간일
1	일자리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사회예산분석팀	2009. 2. 26
2	일본의 지역 중심 고용대책 사례와 시사점	박인화 김봉주 서세욱 조혜정	2009. 4. 21
3	재정법률 개선과제	예산분석실	2009. 6. 10
4	중소기업 지원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이화실 유인규 정상훈 전승훈 이진우 윤성식	2009. 9. 22

[예산정책보고서 제5호]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대한 「소관부처 의견」 검토

발 간 일	2009년 9월 23일
편 집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팀
발 행 인	신 해 룡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788·3772
인 쇄 처	디자인 여백(02·2672·1535)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예산분석팀 (TEL 02·788·3772)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ISBN 978-89-6073-232-2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09